

### <참고문헌>

- Alexander, K.L. & A.M. Pallas, 1983, "Private Schools and Public Policy: New Evidence on Cognitive Achievement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Sociology of Education* 56(October): 170-182.
- Charez, R., et al. 1984, "The use of high inferene measure to study classroom climat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4(2), 237-261.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Edward Arnold Publishers, 최병두 옮김,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 McNeil, L., 2000, *Creating new inequalities*, Phi Delta Kappan. June 2000, pp. 729-734.
- OECD, 2004, *Education and Equity*
- OECD, 2004, *Policy Brief*
- Skon, L., & Johnson, R., 1980,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conditions on children problem performanc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Spring, 17(1), 83-93
- UNESCO, UN-HABITAT, 2009,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Paris, UNESCO, MOST.
- United Nations, 2005, *Economic, Social and Cltural Rights-Handboo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 옮김, 2007,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 World Urban Forum, 2004,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 Paul Willis, 1978, *Learning To Labour*, Ashgate Publishing Limited, 김찬호, 김영훈 옮김, 2004, 「학교와 계급 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이매진.
- 김하수 외, 200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태동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류방란, 김성식, 2006, 「교육격차와 학교교육의 기능」, 제 32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윤종혁 외, 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윤형호, 강민정, 2009, 「서울시 자치구별 상위학교 진학률에 대한 거주지 효과분석」, 《서울도시연구》, Vol.9, No.4, 87-106.
- 사토마나부 저, 손우정 역, 2006,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배움이 있는 수업만들기」, 에듀케어.
- 최은영, 2007, 지역특성별 학교 간 교육환경의 격차, 《공간과사회》, 27, 150-171.
- 《인터넷 자료》
- 동아일보DESK: <http://www.journalogplus.net/education/>
- 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go.kr/pa/PARetrieveMain.laf>

##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 거리노숙인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김준호

### 1. 들어가며

최근 국내의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소수자(minority)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주변인', '타자' 등으로 비유되는 소수자 담론은, 근대적 이성 중심 사고의 탈피라는 맥락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인데, 많은 경우 그들의 '공간(space)'에 대한 진중한 사유는 부족했다. 요컨대 수많은 연구자들이 '공간'을 수동적이며 정태적인 대상으로 간주해 버림으로써, 소수자들이 살아가고 생활하는 '공간' 그 자체에 깊이 천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공존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역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공공간(public space)'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따라서 '권리(right)'의 측면에서 소수자를 조명할 때 역시 한계가 존재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공간 안에서, 공간을 통해 존재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그릇이 아니라, 사회와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의 '공간' 관련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개념, 즉 소수자와 공공공간, 그리고 권리에 주목하는데, 구체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① 누구에게나 열린 중립적 공간이라는 공공공간에서, 소수자들은 과연 어떤 위치성(positionality)을 갖는가?
- ② 소수자의 위치성은 공간 안에서, 그리고 공간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가? 즉, 공공공간은 소수자들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수자들은 어떻게 공공공간을 재현(representation) 및 전유(appropriation)하고 있는가?
- ③ 결국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 기존의 권리 담론을 어떻게 해체 및 재구성 할 것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 수준의 답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한 범주인 '거리노숙인(rough sleepers)'을 사례로 논의를 진행한다. 집과 같은 '사적공간(private space)' 없이 모든 생활을 공공공간에서 영위해 나가는 거리노숙인은 공공공간과 소수자의 관계,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논의하는데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공공간 내 거리노숙인의 위치성, 공공공간으로부터 거리노숙인이 겪는 배제와 포섭 및 제재, 그리고 거리노숙인이 공공공간을 새롭게 전유 및 재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거리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권리 개념을 비판하고, '공

간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다. 결국 공공공간과 소수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제언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 2. 소수자 개념 및 거리노숙인의 위치성에 관한 고찰

### 1) 소수자 개념 관련 국내연구의 검토

최근 소수자 관련 국내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소수자의 의미와 관련된 논의로 소수자 개념 및 소수자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소수자의 유형과 범주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김하수 외, 2008; 전영평, 2009; 윤수종, 2009), 둘째는 소수자 운동 관련 논의로 소수자들의 운동이나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운동을 각각 해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문성훈, 2005; 윤수종, 2005). 마지막 주제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논의로 권리 확보 주장의 근거, 즉 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서부터 바람직한 권리 형성방향 및 정책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홍수영, 2005a; 윤수종, 2009; 장미경, 2005; 윤인진 외, 2006). 여기서는 사회학, 행정학, 철학, 사회복지학 등을 가로지르며 수행되어 온 소수자 관련 논의 중 '소수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본다면 소수자는 수적으로 적은 집단이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수적으로 많지만 통상 소수자라고 여겨지며,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가 시행되던 시절,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백인이 다수자이고 흑인이 소수자였다(윤수종, 2009). 왜 소수자 운동 및 소수자 연구에서 드러나는 소수자의 범주 구분은 명백하지 않은 것인가? 과연 소수자는 누구인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소수자를 설명하고 있다(전영평, 2006).

"큰 사회 안에서 문화적·민족적·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특수집단. 한 사회 안에서 지배집단에 종속해 있는 집단을 가리키며 그 규모보다는 종속성이라는 성격이 소수 집단"

요컨대 소수자 개념은 수적 규모의 적음보다는 '구별성', '차별성', '종속성' 등의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의 열세로서 소수자를 의미한다. 즉 권력관계에서 지배 종속 관계를 일정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윤수종, 2009)<sup>2)</sup>. Dworkin and Dworkin(1999)에 따르면 소수자를 정의하는 데는 네 가지 조건, 즉 ①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②권력의 열세, ③차별적 대우의 존재, ④소수자 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 필요하다(윤인진 외, 2006). 여기서 식별가능성이란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권력의 열세

1) 예컨대 소수자 운동 관련 연구자는 소수자의 범주에 성매매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죄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네 마주이, 탈북자, 북파공작원, 어린이, 불안정 노동자, 청년 실업자, 부랑자, 중독자, 환자, 정신병원수용자, 노숙자, 혼혈아, 수양부모운동, 다른 과학운동, 성폭력반대운동 참여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윤수종 외, 2005), 이주노동자, 화교, 해외교포, 이주배우자, 정신대할머니, 미혼모, 미혼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연구자와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상이한 기준에 따라 소수자로 논의되고 있다(전영평, 2007).

2) 한편 소수가 사회적 약자로 치환되는 부분에 대하여 윤수종(2009)은 "대부분의 소수자는 현실에서 약자에 속하지만 약자라는 개념은 강자를 전제로 하고 도움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하면서, "계급적 구분 위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담지한 주체들 가운데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수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이해관계 위에서 계급적 지위를 지니지, 정체성에 근거한 집합성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근대적 이성에 근거한 근대적 인간상은 표준화를 지향하는데, 소수자들은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소수자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는 것(윤수종, 2009)'이다.

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차별적 대우의 존재란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소수자 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더라도 차별적 관행이 반복되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윤인진 외, 2006). 한편 Douglas(1966)에 따르면 인간 사회 질서의 근본에는 순수와 위험으로 대비되는 상징체계가 존재하는데 질서가 부여된 순수라는 상징체계와 그 외부에 존재하는 오염된 대상인 위험이라는 상징체계가 있고 이는 정돈되고 절제하는 '우리'와 일탈적이고 파괴적인 '타자'를 표상하며 여기서 '타자'의 개념이 소수자에 해당된다(유명기, 2004; 전영평, 2006에서 재인용). 장미경(2005)은 특히 소수자를 '표준적인 인간과는 거리가 먼 주변인'으로 규정하고, 주변성과 타자성, 일탈이 극대화되면 범법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다수자의 지배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수적으로는 다수자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소수자란 태생적·생물학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후천적·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탈근대적 개념인 것이고, 따라서 소수자의 정체성은 고정적 성격보다는 유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편견과 차별은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라기보다 다수자의 기득권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한 것이고, 권력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윤인진 외(2006)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소수자의 지위와 신분은 일정 부분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에 기인하는 것이다(윤인진 외, 2006). 그러나 다음의 Deleuze와 Guattari의 지적처럼 소수자는 다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획당하기만 하는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창조력과 잠재력을 지닌 저항의 메타포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다수자가 초코드화하는 권력의 방식에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서, 소수자는 단순히 다수자에 의해 배당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그럼으로써 측정 불가능한 잠재력을 지닌다(Deleuze & Guattari, 2001; 윤수종, 2005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수자 개념의 특성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소수자는 '근대적 산물의 탈근대화'로 인해 드러나고 강조되는 개념이다. 즉 표준화 및 통일성을 지향하는 '근대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소수자들이고, '탈근대화'를 통해 근대적 요소가 해체되고, 그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개념이 바로 소수자들이다.

② 소수자는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이다. 요컨대 '맥락(context)'에 따라 특정 지점에 '위치지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이러한 구성은 개인적·사회적 인식의 그릇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전략적·이데올로기적으로 '수행(performance)'되는 것이다.

④ 소수자는 다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객체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의 잠재력을 지닌 주체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이제 위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소수자 사례로써 거리노숙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요컨대 "거리노숙인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생산'되었는가?", "과연 그들은 사회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 답하려는 것이다.

## 2) 거리노숙인의 위치성<sup>3)</sup>

흔히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되는 집단, 예컨대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은 비교적 뚜렷한 개념적·현상적 범위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거리노숙인은 굉장히 가변적이다. 멀쩡했던 한 집안의 가장이 사업부도로 인해 어느 순간 갑자기 거리노숙인으로 전락하기도 하며, 거리노숙을 전전하던 사람이 어떤 기회를 통해, 혹은 끊임없는 자활 노력을 통해 거리노숙을 탈피함으로써 다시 주류사회 일원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즉, 사회구성원 누구나 거리노숙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거리노숙인 누구나 주류사회 일원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다른 소수자 집단과 달리, 주류사회(혹은 다수자 집단)를 넘나드는 장벽이 비교적 낮은 집단이 바로 거리노숙인이다. 사회적 위치 역시 타 소수자에 비해 모호하다. 가령 국민(혹은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회적 위치가 비교적 명확하고 따라서 내부와 외부가 확실히 구분된다. 그러나 거리노숙인의 경우 국민 혹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분명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서울의 시민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혹은 때로는) 이들의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로 취급받고, 따라서 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한다<sup>4)</sup>.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기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저기에 위치한 것도 아닌 '간(間)경제적 존재'로서 사회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하위계급(underclass)<sup>5)</sup>'으로서의 거리노숙인은 차이보다 이상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공동체<sup>6)</sup>에서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더해지면 '거리노숙인 위치짓기'는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도시는 이러한 자본주의 담론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국내 거리노숙인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sup>7)</sup>) 거의 모든 거리노숙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장악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생산자와 소비자' 등의 구도로 전개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 됐든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적어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하고 또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거리노숙인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타자'로 존재하며, 이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위치지어진' 결과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담론양식에서 헤게모니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쟁 체제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민',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의 상(像)을 전략적으로 생산하고, 또 강화했다. 요컨대 '바람직한 시민'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즉 '적어도(그리고 가능한) 노동인구와 소비자로 존재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일조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어긋나는 거리노숙인들은 더욱더 주변화 된 존재로 사회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거리노숙인을 사회의 전체성과 통일성을 해치는 존재로 규정했고, 따라서 배척하고 제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른바 주류사회에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생산, 즉 전략적인 '거리노숙인 위치짓기'가 신자유주의적

3) 이하의 내용은 김준호(2010)의 연구를 요약·발췌하였다.

4) 가령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들은 국가로부터 가장 기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투표의 권리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다(정규식, 2009).

5) 하위계급이라는 용어는 Myrdal(1962)이 거시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기술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세대를 거쳐 되물립되는 빈곤, 공공복지에의 의존, 실업과 같은 경험 등을 기술하는 데 이용된다(Valentine, G., 2009).

6) 공동체 개념에 대해 Young(1990)은 ①차이보다 통합을 중요시하고, ②이에 따라 배제를 발생시키며, ③비현실적인 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같음' 보다는 '다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우리나라 노숙인의 절대다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노숙인의 60% 이상이 서울의 노숙인이며 쉼터 이용 노숙인 중 서울의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전체의 2/3에 이른다(남기철, 2009).

자본주의에 의해 더욱 추동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거리노숙인의 위치성(positionality)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리노숙인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앞서 확인한 소수자의 특성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거리노숙인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일차적 경로는 시민들의 '직접 경험'이다. 즉, 시민들이 거리노숙인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직접적 경험의 과정을 통해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경험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리노숙인의 부정적 이미지, 예컨대 '노숙인은 비난받을만 하다', '노숙인은 더럽고 불결하다', '노숙인은 알콜 중독자다', '노숙인은 위험하다' 등의 이미지로 그들을 낙인(stigma)찍는다. 물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리노숙인들이 분명 있다. 그러나 모든 거리노숙인들이 그런 건 아니다. 시민들이 경험한 '사회악(惡)과도 같은' 거리노숙인은 전체 노숙인 중 일부일 뿐이다. 요컨대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두명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체험한 직접 경험의 사례는 무엇인가? 왜 시민들은 질이 좋지 못한 노숙인들 '만'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는가? 왜 더럽고 게으르며,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이는 노숙인들 '만' 발견되었는가? 이는 평범한 거리노숙인, 즉 시민들의 기준에서 표준 행동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노숙인들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고 있는 노숙인,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머무는 노숙인,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상태의 노숙인, 차림새가 말끔한 노숙인 등은 '숨겨진 노숙인(hidden homeless)'으로 치환되고, 따라서 시민들의 눈에 밟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 요컨대 주류사회가 권장하는 시스템에 순응하는(혹은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노숙인들은 시민들의 눈에 '노숙인이 아닌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 없이 이들을 지나쳐간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규정한 표준 행동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노숙인들 '만' 시민의 눈에 비춰지고 체험되는 것이며, 이렇게 체험된 바는 결국 시민들의 '거리노숙인에 대한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거리노숙인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 요컨대 노숙인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만' 노숙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거리노숙인은 맥락에 따라 '구성'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 3. 공공공간과 공공성, 그리고 거리노숙인

앞서 우리는 소수자 개념을 논의하며, 그 사례로 거리노숙인의 위치성에 대해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치성은 공간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혹은 어떻게 은폐되는지, 공공공간과 소수자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1) 공공공간의 공공성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공공공간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사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공간은 공공성이 담지된 공간이며, 따라서 공공공간의 성격은 공공성을 통해 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성', 혹은 '공적인 것(the public)'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적인 것'이란 감춰진 것이 아닌 드러난 것(가시성),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는 것(개방성), 부분이 아닌 전체(집단성)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이승훈,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훈(2010)은 "공공 영역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며,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공공공간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만한 일’,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일’ 등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이승훈, 2010). 따라서 공공성은 하나의 공동체 혹은 사회를 위해 절박한 문제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일치를 가능케 하는 가치이며, 절박한 문제와 부차적 문제를 구분하고 사회에 부딪친 위험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쳐 공속성(共屬性)을 의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윤해동, 2010). 이처럼 공공성은 유동성을 본질로 하는 가치이며(윤해동, 2010), 그래서 공공성 담론은 그동안 한국적 상황에서 작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이주하, 2010). 요컨대 전략적·이데올로기적 산물이자 도구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공공공용이 되는 것8), 공공공간에 담지된 공공성이 공간 내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서로 다르게 형성 및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편 민주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과 관련된 담론들은 현 한국사회의 혜제모니를 장악한 대표적 이데올로기로, 공공공간의 공공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게다가 (체제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전체성이나 통일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안과 밖의 구분 짓기를 강조하는 공공성의 본질이 이와 결합함으로써, 민주주의·자본주의·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공공의 가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도적이며 또한 타당한 것으로 비춰졌다. 특히 자본주의의 담론에 근거한 공공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지위와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성이 공공공간에 녹아들으로써 공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은 다수자(주류)와 소수자(비주류)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거리노숙인은 자본주의적 공공성이 녹아든 공공공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타자화되는 대표적인 소수자다. 거리노숙인과 공공공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 2) 공공공간과 거리노숙인<sup>9)</sup>

주지하듯 공공공간에 담지된 공공성은 ‘누구에게나 열린 중립적인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인 사람에게만 공간을 허용하는 배타적 공공성으로 개념화 되어 있다. 물론 거리노숙인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공간에서의 거리노숙인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래서 부정되어야만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들은 주류사회, 그리고 주류담론이 장악한 공공공간이 요구하는 특정한 방식과 규칙<sup>10)</sup>, 그리고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공간으로부터 공공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오히려 공공성의 미명 하에 추방되고 격리된다. 결국 거리노숙인에게 공공공간은 이질적 공간이자 주류사회가 장악한 ‘지배의 공간(space of rule)’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공간이 누군가에는 ‘보호의 공간(space of care)’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공간(space of fear)’이 될 수도 있다는 Johnsen, S. et al.(2005)의 지적은

8) 가령 이주하(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성은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는데,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리주의가 결합된 공공선(the public good)이 지배적인 공공성 개념이며, 프랑스식 공공성은 공리주의적 공공재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그러한 공공성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요시한다. 또 일본에서의 공공성 개념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관제(官製) 용어로서 독점되어 왔으며, 오늘날 시민社会의 성장에 따른 시민적 공공성과 보수우파의 내셔널리즘의 상반된 두 경향이 병존하고 있다(채원호, 2008; 이주하, 2010에서 재인용).

9) 이하는 김준호(2010)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10) 소유자가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와 달리 공공재는 ‘올바른 이용방식’에 대한 다소 획일적인 규칙들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과 철도역사는 여행객을 위한 공간으로, 거리는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화’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이 공간을 각 기능에 부응하여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김홍수영, 2005b).

거리노숙인들이 살아가는 공공공간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지배의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이 거리노숙인에게 가하는 권력을 잘 보여준다.

지난 2005년 1월, 서울역 거리노숙인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sup>11)</sup>. 이에 노숙인과 경찰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바로 며칠 뒤에 서울시는 ‘역사내 노숙인 단속 및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예방의 목표는 물론 거리노숙인 ‘추방’이었다. 서울시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운 노숙인 문제점의 주요 골자는 ①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②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전 저해의 사례로 며칠 전 발생했던 ‘노숙인 사망으로 인한 (노숙인들의) 역사내 난동사건’을 비롯하여 노숙인이 야기시킨(혹은 노숙인이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사고들이 언급되었다. 더불어 예방 대책 뒤에는 “뉴욕지하철 노숙자 실화 화재사건 관련 개황(요약)”이라는 또 하나의 자극적인 사례가 첨부되었다. (당시 서울역사 측의 책임론이 거론되었을 만큼) 의문스러웠던 거리노숙인의 죽음이나 노숙인들이 시민으로부터 받았던 피해 사례는 철저히 배제된 채, 그들을 추방 및 격리시킬 근거가 되는 사례만 선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공공공간’의 질서를 위하여 거리노숙인을 이에 대립되는 지점에 ‘위치시킴’으로써 공간으로부터의 배제를 합리화 하였다. 또한 ‘보호시설 입소 권장’을 추방의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배제의 기제뿐 아니라 특정 공간으로의 포섭 기제까지 갖추었다. 배제의 기제와 포섭의 기제가 공존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주류사회는 ①공공공간으로부터 거리노숙인을 추방시킬 수 있고, ②노숙인의 인권을 고려한 인도적 대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sup>12)</sup>, ③이동성이 강한 노숙인들을 지배사회의 감시 아래 둠으로써 이들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④지배사회가 권장하는 공간(쉼터, 시설 등)으로 그들을 포섭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이다. 요컨대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주류사회에 의해 실시되는 공간적 재배치 전략이며, 이로써 그들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지배의 공간’은 더욱 더 견고해진다. 한편 공간으로부터의 배제와 포섭은 국가 차원의 메가 이벤트 등이 열릴 때 더욱 심해진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시행된 ‘거리노숙자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sup>13)</sup>’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하철역 등 기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과 거리노숙인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주변지역 및 공원, 관광호텔 월드인 등을 중심으로 거리노숙인을 단속하였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잔존 노숙인에 대해 300명씩 4박 5일 동안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특별 연수를 실시하고, 노숙금지구역 내에서 무료급식을 중단했으며, 이들을 타 지역 또는 실내 배식으로 유도해 거리노숙인 집중을 예방하려 했다. 물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는 동안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게 등장했지만, 서울시는 그대로 추진하였다. 요컨대 거리노숙인은 ‘(적어도 월드컵 기간만큼은 더욱) 공공공간에 있으면 안 될 존재’, ‘(국가 위상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은폐해야 될 존재’로 치부되었고, 따라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붉은 물결을 이루며 응원할 때 거리노숙인은 ‘국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는 마치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의 전두환 정권이 실시했던 정책<sup>14)</sup>이

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50123095416211&p=yonhap>

12) 즉, 아무런 대책 없이 공공공간에서 거리노숙인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187542>

14) 88년 서울올림픽은 분명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다. 그러나 ‘88년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강제 철거의 역사가 화려한 올림픽의 그늘 안에 가려졌다(‘상계동 올림픽’은 88년에 제작된 김동원 감독의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개발이기주의 속에 무참히 삶의 터전을 뺏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작품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계동을 비롯한 200여 곳을 강제 철거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성화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그리고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계동 지역에 대대적인 철거를 자행한 것이다. 또한 올림픽 아파트촌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송파 지역의 도시민들을 강제철거 시켰다. 주류사회가 권장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배제’의 방법으로 ‘처벌’한 것이고, 이는 2002년 월드컵 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거리노숙인을 배제시켰던 논리와 동일하다. 결국 전두환 정권에게 서울올림픽은,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월드컵은

재현되는듯한 모습이었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G20 서울 정상회의' 또한 한일 월드컵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배의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대주택을 매입해 노숙인들에게 '그룹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sup>15)</sup>.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쉼터는 항상 인원이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돋기 위해'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결국 거리 환경 정비를 통해 거리노숙인을 은폐하고자 하는 전략적 공간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월드컵이나 정상회의 등을 앞둔 시기에 거리노숙인은 특히 더 격렬하게 배제당하고, 또 포섭당한다. 자본주의 담론이 글로벌 차원에서 혜계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거리의 노숙인은 보이기 부끄러운 존재로 위치지어졌고, 이는 공공공간으로부터 그들을 꾸준히 배제 및 포섭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거리노숙인은 공공공간의 끊임없는 공간적 재배치 기제 위에 놓여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성 담론 자체의 문제점이다. 즉 공공공간의 공공성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성을 강요함으로써 '다름'을 '틀림'으로 치환시키는데, 이로 인해 주체들 간 '차이'는 '차별적'으로 용인되게 된다. 가령 거리노숙인이 생산하는 '차이의 공간(space of difference)'의 예가 그러하다. '차이의 공간'이란 사회적으로 기 형성되어 있는 목적과는 다르게 공공공간을 전유함으로써 생산되는 공간인데, 가령 시민의 휴식처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공원 벤치의 경우, 거리노숙인은 잠을 자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욕구 차원에서 발생한 행동일 수도 있고, 미적 차원에서 특정 벤치에 대한 집착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수행된 행위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의 행동은 분명 공간의 본래 용도와 맞지 않는 '공간적 실천'이자 '전유'이며, 이로 인해 공원 벤치라는 조그만 공간은 거리노숙인에 의해 '재현'되었다. 이른바 '차이의 공간'이 생산된 것이다. 김준호(2010)는 서울역 거리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네 가지 유형의 '차이의 공간', 요컨대 '수면의 공간', '취식의 공간', '구걸의 공간', '부유의 공간'을 각각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공간에 대한 주체적·능동적 실천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노숙인이 생산하는 '차이의 공간', 혹은 거리노숙인을 통해 드러나는 '차이의 정치'는 공공공간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기반의 공공공간에는 자본의 논리에 부합하는, 그래서 교환가치로서 존재가능한 주체들의 '차이'만 선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거리노숙인들에 의해 생산되는 '차이의 공간'이나 '차이의 정치'를 낭만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용가치로서 공공공간을 전유하려는 거리노숙인들의 실천이 애초부터 고려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다름'은 '틀림'이 되어버리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리노숙인의 공간적 재배치에 관한 두 번째 고찰은,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대항담론이 '인권', '시민권', '주거권' 등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문제, 즉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거리노숙인이 제외되는 문제, 공간적 재배치에 대항한 전유의 권리 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공공공간의 거리노숙인은 공간 속에서, 공간을 통해, 공간을 전유하며 살아간다. 더불어 다수자의 관점을 대변하는 공공성은 (거리노숙인과 같은)소수자에 대한 공간적 재배치로써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인권이나, 시민의 권리 개념인 시민권, 주거인의 권리를 가리키는 주거권 등은 공간 전유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을뿐더러, 거리노숙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도 없다. 언뜻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권이나 시민권, 주

경제성장의 견인차뿐 아니라 정권 정당화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1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28016009>

거권은 사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실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근대 도시에서 '인간'이나 '시민', '주거인' 개념은 사회 체제 유지에 공조하는 이들을 지지하며, 동시에 이들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주거지가 없는 거리노숙인들은 더 이상 주거인도, 시민도,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인간도 아닌 존재가 된다. 요컨대 거리노숙인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합당한 주체가 아닌 것이다. 그 결과 공공공간 안에서 거리노숙인이 받는 각종 배제와 포섭의 정치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기존의 권리 담론은 이들의 공간적 재배치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소수자의 권리 개념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4. '공간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sup>16)</sup>

거리노숙인과 공공공간 간 관계에 대한 사유를 확장해봄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로 '공공성 개념의 재구성'과 '공간에 대한 권리 확보'가 그 것이다. 이는 구체적 정책 및 행정사항보다 계몽 전략, 즉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수렴 및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공공성은 '차이'가 존중되는, 그래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체 및 재구성되어야 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낯선, 다양한, 혼종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hetero와 장소라는 의미의 topos/topia의 합성어로서 Foucault가 본격적으로 주체화한 개념이다(배정희, 2009). Foucault는 권력의 공간, 모순적 공간에 대항하는 대안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제안하는데, 이는 인지적 직관으로 채워진 유토피아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sup>17)</sup> 사회의 지배질서를 교란시키며 어딘가에 존재하는 현실감을 지닌 장소로서 일상생활로부터 일탈된 타자적 공간을 생산하는 잠재성이다(정병언, 2007)<sup>18)</sup>. 요컨대 타자의 공간이자 주변적 공간, 일탈의 공간, 저항의 공간, 대안적 공간이 바로 헤테로토피아이며, '다양성'과 '유동성'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내세우는, 하지만 비현실적 유토피아와는 다른 개념이 바로 헤테로토피아인 것이다. 결국 헤테로토피아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성이라 함은, 닫혀있는 근대적 사유와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혼종적(hybrid) 성격의 공공성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주체들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노숙인과 같이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 까지도 인정하고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공공성이자 공공공간이다.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권리 확보' 차원으로, 이는 인권, 시민권, 주거권 등 기존 권리 담론을 변형·확장·대체할 수 있을만한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개념에서 그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Lefebvre의 설명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적 '시민들'은 국가의 제도화된 목소리를 낸다(이현재, 2008). 즉 시민들의 형식적 시민권의 위상은 자신의 국가적 소속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적 통제 밖에 있는 타자들은 원천적으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오직 국가적

16) 4장에 관한 부분은 아직 연구 진행 중으로, 여기서는 전반적 논의의 흐름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7) 배정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헤테로토피아의 이해에서 유토피아의 존재와 의미는 전제조건과 같다. 이상 세계에는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토피아라 한다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나 결코 장소성을 가지지 못하는, '장소 밖'의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는 '거울이미지'의 관계를 가진다. 결국 근대에서 유토피아가 역사의 발전으로 시간화된 이상세계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재공간화된 유토피아인 것이다.

18) Foucault에 의하면 헤테로토피아는 "그 기능면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공간과는 다르며 심지어 대립적이기조차 한 특이한 공간"이며,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공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들의 합법성을 교란시키는 기묘한 장소이기도 하다(정병언, 2007).

소속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Purcell, 2002; 이현재, 2008에서 재인용). 하나의 작품(oeuvre)으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Lefebvre는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와 연결되는 도시공간을 주장하면서, 단순 점유나 거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간)전유의 권리'를 핵심 권리로 제시한다(Purcell, 2003).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different), 즉 "반드시 동질화하려는 권력에 의해 결정된 범주 속으로 강제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는 곧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이며(Dikec, 2001), 이는 참여와 전유의 차원에서 두루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하기 때문에(강현수, 2009),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나 시민, 주거인이 아닌 '이용자(users)' 중심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소수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요컨대 '공간'을 전유하고자 하는 '이용자' 중심의,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의미로서 '공간에 대한 권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즉 공공성 개념의 재구성과 공간에 대한 권리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거리노숙인과 같은 소수자들이 공공공간에서 더 이상 배제와 포섭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그리고 소수자들의 능동적 공간 재현이 더 이상 '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혜테로토피아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성' 개념과 '공간 이용자' 중심의 '권리' 개념은 새롭게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 41-88.
- 김준호, 2010, 「거리노숙인이 생산하는 ‘차이의 공간’에 대한 연구: 서울역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수, 조태린, 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1), 79-104.
- 김홍수영, 2005a, 「시민성을 기준으로 조명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경제와 사회』, 65, 179-200.
- 김홍수영, 2005b, 「두 도시 이야기: 노숙인을 통해 바라본 도시공간」, 『아세아연구』, 120, 117-149.
- 남기철, 2009, 『노숙인 복지론』, 집문당.
- 문성훈, 2005, 「소수자 등장과 사회적 인정 결서의 이중성」, 『사회와 철학』, 9, 129-154.
- 배정희, 2009, 「카프카와 혼종공간의 내러티브: ‘국도 위의 아이들’과 혜테로토피아」, 『카프카연구』, 22, 43-60.
- 윤수종, 2005,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경제와 사회』, 67, 12-38.
- 윤수종, 2009, 「인권과 소수자, 그리고 욕망의 정치」, 『진보평론』, 42, 140-162.
- 윤인진, 이진복, 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7(1), 41-92.
- 윤해동, 2010, 「식민지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사이』, 8, 163-195.
- 이승훈, 2010, 「공공 영역과 ‘시민됨’의 문화적 조건」, 『사회이론』, 37, 101-133.
- 이주하, 2010,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공공성: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2), 145-168.
- 이현재, 2008,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33, 111-133.
-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6), 159-182.
- 전영평, 2006, 「한국의 소수자 문제와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35-649.
- 전영평, 2009, 「한국 소수자 정책의 지형: 정책상황의 유형화와 사례」, 『한국행정논집』, 21(3), 839-861.
- 정규식, 2009, 「노숙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재해석과 노숙인 운동에 관한 연구: 추방된 자들의 전복적 주체화」,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병언, 2007, 「저항적 여성공간으로서의 혜테로토피아: 마샤 노먼의 Getting Out」, 『현대영미드라마』, 133-152.
- Dickeç, M., 2001, "Justice and the spatial imagin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 1785-1805.
- Johnsen, S., Cloke, P., May, J., 2005, "Day centres for homeless people: spaces of care or fear?",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6(6), 787-811.
- Purcell, M.,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3), 564-590.
- Valentine, G., 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역, 논형.
- Young, I. M., 1990,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Nicholson, L. J. (ed.), 『Feminism/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 도시와 노점상 인권

신거철, 김병인, 조승화

한국 노점상의 수는 많게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며 특히 서울, 경기지역과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수는 노점상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라져야 될 존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현재 노점단속은 지자체의 업무로써 노점단속 용역반을 고용하여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점상들이 도시의 공공공간인 거리로 생존을 위해 나온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인권침해의 현실, 그리고 현 정부 및 지자체(서울시 중심)의 노점상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이 도시의 공공공간에서 어떻게 생존(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의 저점들을 찾고자 한다.

### 1. 노점상은 누구인가

#### 1) 노점상이란?

- 사전적 의미로는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
- 1) 행상을 비롯 보따리, 좌판, 노점, 포장마차, 차량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들로서,
- 2) 일반적으로 인도나 차도, 시유지나 사유지에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
- ‘잡상인’, ‘불법노점상’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노점행위가 법, 제도적으로 허가받지 않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불법적인 존재,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음. 그 결과 법과 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
- 자영업자? 비공식 노동자 중 자가고용노동자(self-employed worker, own account worker) : 노점상은 공식 통계에서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음. 노점상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 것임. 세계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연구와 조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WIEGO<sup>1)</sup>는 노점상을 비공식 노동자, 특히 자가고용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법 등을 노동3권 등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 노점상은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 왔는가?

정부는 친 서민정책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노점을 방문하여 떡볶이나 어묵을 먹기도 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이나 서민정책을 홍보할 때 상징적으로 노점을 방문하고 노점상을 보호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점상 단속은 매우 폭력적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점에 대해 단속과 보호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상징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점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입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점상이 가진 사회적 역할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실업자, 저소득빈곤층의 자활 및 생존 수단으로 존재: 빈곤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중들이 자생적인 조성한 노동안전망이라 볼 수 있음.
- 하부유통구조로서의 역할: 영세공장 물품, 대기업공산품의 재고처리, 농수산물.
- 저소득층에게 생필품을 저가에 공급
- 시장 및 상거래의 활성화: 재래시장의 많은 부분을 노점이 차지함.
- 풍물적 기능: 포장마차 문화, 종로의 ‘김떡순’ 등

### 2. 노점상의 목소리

#### 1) 노점상의 현실

지난 2005년, <전국노점상총연합>이 약 570 명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됨.(1998년 동 단체에서 약 740 명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

#### □ 성별

여성 및 남성 노점상의 비율이 과거 여성이 다수였던 것에 비해 여성 51.30%, 남성 48.70%로 비슷한 비율로 변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던(11% 차이) 과거에 비해 불안정 노동의 결과 남성도 대거 노점상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학력 및 연령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아지며 특히 고졸 혹은 고등학교 중퇴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39.70%). 연령대로 보면 50대 노점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었으며(51.3%) 2~30대도 증가. 고학력 청년실업자, 중년 실업자 등이 노점상으로 유입한 것을 반영. 노점형태도 좌판, 특히 포장마차가 급격히 증가.(7%) 안정된 자리의 부족과 기동성, 시대 추세에 따라 차량노점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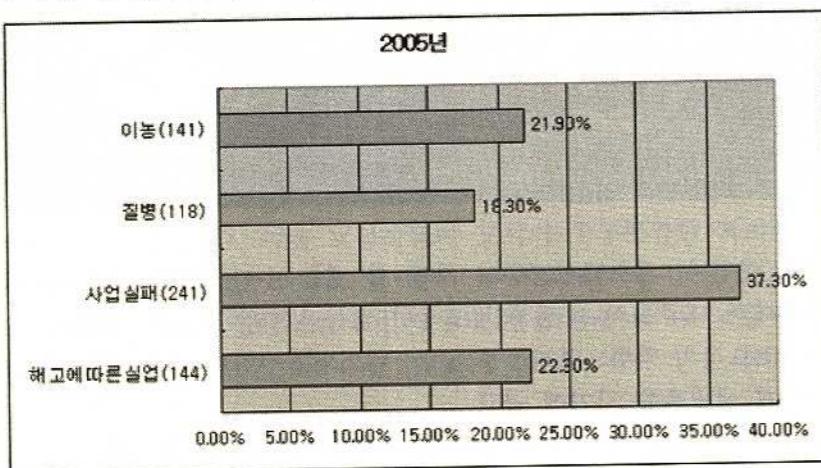
1) Women in the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 Organizing. www.wiego.org

#### □ 노점 경력

노점경력이 1~10년인 사람이 급격히 증가(1~5년이 47.6%, 6~9년이 23.8%)한 반면 10년 이상인 사람은 절반 이하로 감소. 신발생 노점상이 매우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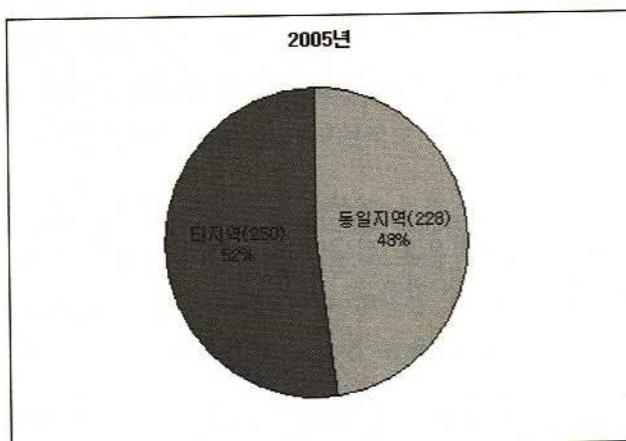
#### □ 노점 이전 직업

98년의 조사에서 사업 실패(37.3%), 직장 퇴사 및 해고(22.3%)로 인하여 노점상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05년 조사를 통해 이전 직업을 알아본 결과, 전문직 종사자 일부에 비해 제조업 회사원(25.2%), 판매 영업사원(16.6%), 음식 숙박시설 종사원(10.9%) 순이었음. 여전히 사업실패(37.3%), 해고에 따른 실업(22.3%)로 노점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



#### □ 거주 지역

과거에는 거주 지역에서 노점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75%) 이제는 절반 이상(52%)이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음. 도시개발 및 거주 지역 내 노점 수 포화와 노점 가능한 지역의 축소로 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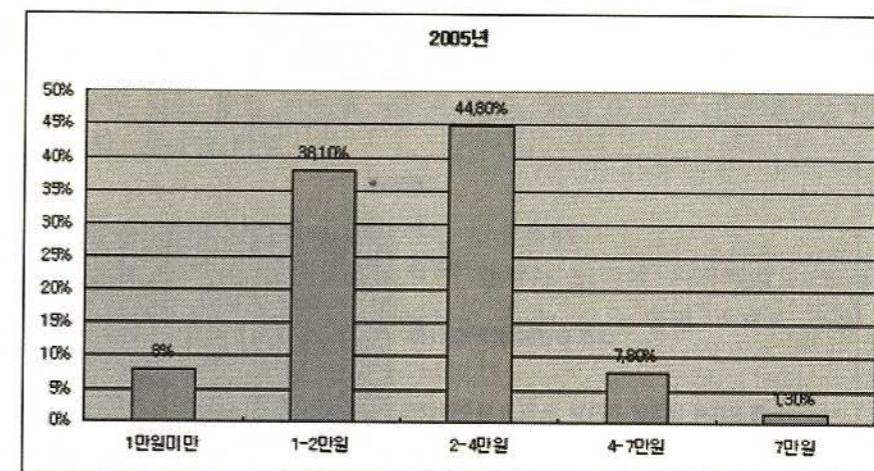


#### □ 노점시간 및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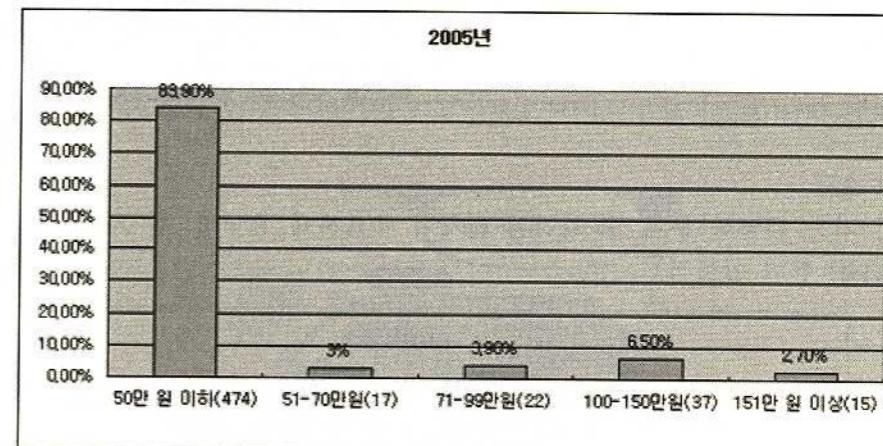
하루 8~15시간 장사하는 사람이 76.6%에 달할 정도로 하루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월 21일 이상 장사하는 사람이 66%. 그 결과 60%가 지병이 있고 지병으로는 관절염(27.8%), 위장장애(17.6%) 등으로 확인됨.

#### □ 수입

하루 순수입은 절반 정도가 3만 원 이하(48.1%)이며 노점상을 하기 전 수입에 비해 나빠졌다가 49%.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2004년 추정)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호대상자는 2.1%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차상위 계층에 속함. 절대빈곤층의 비중은 낮지만 다수의 노점상이 추정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독소조항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고려해야 함. 즉 압도적 다수의 노점상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 노점을 통한 고액소득자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대다수는 자구적 생계수단의 하나로 노점에 종사하고 있음.



<본인 월 수입>



<본인 외 수입원 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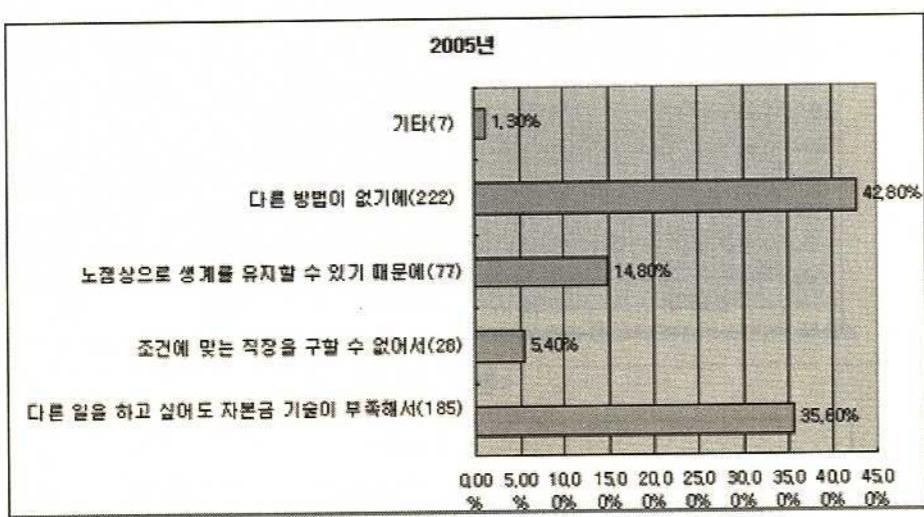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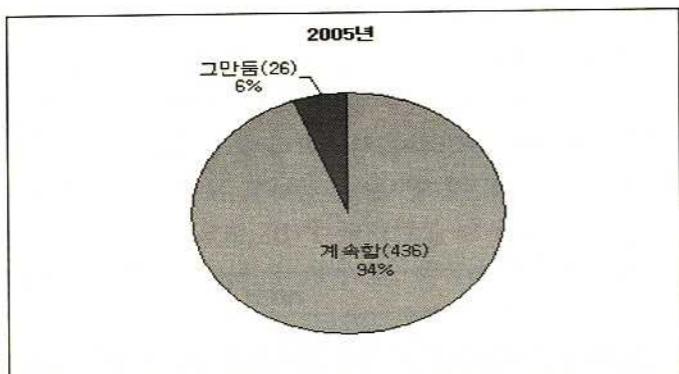
#### □ 단속

대부분 구청직원들이 단속했던 이전과 달리 용역업체가 단속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98년 9.5%→ 2005년 39.6%). 단속 형태도 다양화되어 과태료, 벌금 등을 통한 간접단속이 42.7%, 폭력적인 단속이 20%, 두 방법 동시 병행이 37%.

#### □ 노점 계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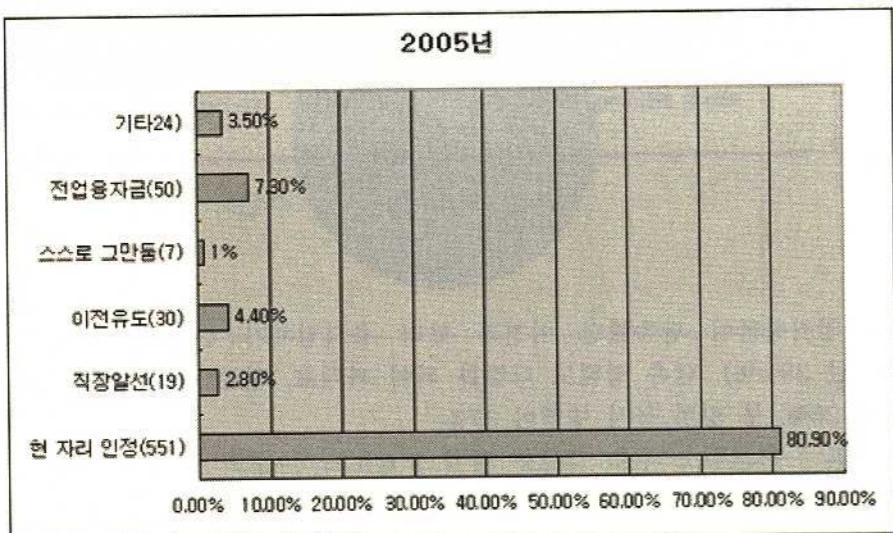
98년에는 노점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사례(34.8%)가 2005년에 대폭 감소(5.6%).

다른 방법이 없거나(42.8%),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서(35.6%) 노점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



#### □ 노점상의 요구

노점상이 겪는 다양한 문제 중 자리의 문제가 주요하게 요구됨. 현 자리 인정(73.7%), 응자 등 자금지원(12.4%) 등이 압도적.



## 2) 노점상이 겪는 인권침해

#### □ 불법이라는 낙인과 차별

“불법 주제에 뭔 말이 많아” 구청 혹은 노점단속 용역이 종종 하는 말임. 불법 노점 행위를 하고 있으니 단속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어도, 장사하는 동안 상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하더라도, 전기, 수도, 화장실 등 기본적인 공공재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당해도 권리가 없다 함. 더욱 이 이는 자녀, 이웃들에게도 셋을 수 없는 상처가 되거나 편견을 받게 됨.

#### □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갈취와 위협

법과 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갈취, 자릿세나 깔세, 자리매매, 단속비리, 노점상-노점상 갈등, 노점상-상인 갈등 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 더불어 수도, 전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브로커 등의 개입, 비리도 발생.

#### □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2000년대 들어 담당공무원들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노점단속 용역업체를 고용, 단속 과정에서 정신적·물리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 다른 한편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이중고를 야기하기도 함.

#### □ 도시 개발, 국제행사를 빌미로 한 단속과 강제 이주: 뉴타운 개발, 디자인거리, G20

뉴타운개발사업, 재래시장 시장개선사업, 디자인 거리 조성, 경전철 개발 등 국책사업 혹은 개발 사업을 이유로 허가된 노점상도 공식적으로는 보장된 권리가 없는 상황. 혹 대책이 나오더라도 강제 이주의 연속임.

더불어 과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G20 등 국제행사를 이유로 노점상은 도시미관, 도시 및 국가경쟁력 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간주, 집중적으로 단속 당하고 있음.



출처: 한겨레신문

### 3. 지자체의 노점정책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노점은 여전히 불법, 단속 대상! 그러나 다른 한 편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된 사례가 있어 왔음.

구 분	보는 시각	요구 내용
일반 시민	- 저소득층 생계수단의 일환 - 보행권침해, 교통방해, 비위생적	- 생계형노점은 일정원칙 하에 허용 - 기업형, 보행권침해 등 노점은 강력단속
시민 단체	- 경제유통망 보완기능과 대체고용 기회를 제공 - 단속은 부분적 해결을 위한 미봉책 - 환경단체 : 도시미관 차원 적극정비 - 사회·복지단체 : 생존권보장차원 접근	- 적정규모의 노점 존재를 인정 - 단속위주 → 관리중심으로 정립 - 현실적인 생계대책 마련
전문가	- 생계수단으로 자구적 사회안전망 역할 - 도시에 활기, 인간적분위기 등 긍정적	- 노점의 존재를 인정 -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대책 마련 - 장기적으로 등록제, 허가제 도입
공무원	- 노점은 현행법상으로 단속대상 - 노점을 인정하면 양산될 우려 - 법과 현실과의 크나큰 괴리	- 단속위주 → 관리위주로 전환 필요 - 일정지역을 시간제, 규격화하여 관리 - 신발생 노점은 강력 단속
점포주	- 단속이 필요하지만 상가 활성화의 보완적 요소로도 작용 - 인근점포와 동일상품 입지 배제	-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점인정 - 노점영업장소 청결유지 요망
노점상	- 생계수단인 노점은 본업 - 노점정비를 생존권 탄압으로 간주	- 노점과 단체의 실체를 인정할 때까지 투쟁 - 노점상의 자율성과 자치조직 활성화

- 출처: 서울시 '노점상 관련 각계 입장' (2007.2)

#### □ 노점상을 불법, 단속 대상으로 보는 근거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시유지 혹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했거나, 사유지를 빌렸더라도 식품 등 관련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점행위, 노점상 자체를 불법, 단속 대상으로 취급.

#### □ 반면, 합법화된 사례로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운영자' 정책 및 현실

노점행위 자체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불법일 뿐인 것이 아님은 이미 풍물시장,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박스, 가로판매대 등), 그리고 최근 규격노점(디자인노점, 특화거리노점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임.

그러나 이 사례가 대안일 수 없는 것은 취지 자체가 노점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점상 일부를 시간제·규격·위치·품목·계약 개선 등을 통해 엄격히 통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없애겠다는 발상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 그 외 노점상 및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은 별도로 붙이게 하겠다는 방침이며 노점상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80년대 말에 추진된 풍물시장, 보도상 영업시

설물 합법화도 각각 풍물시장을 폐쇄, 보도상 영업시설물 조례를 제·개정하여 궁극적으로 없애는 과정임.

### 4.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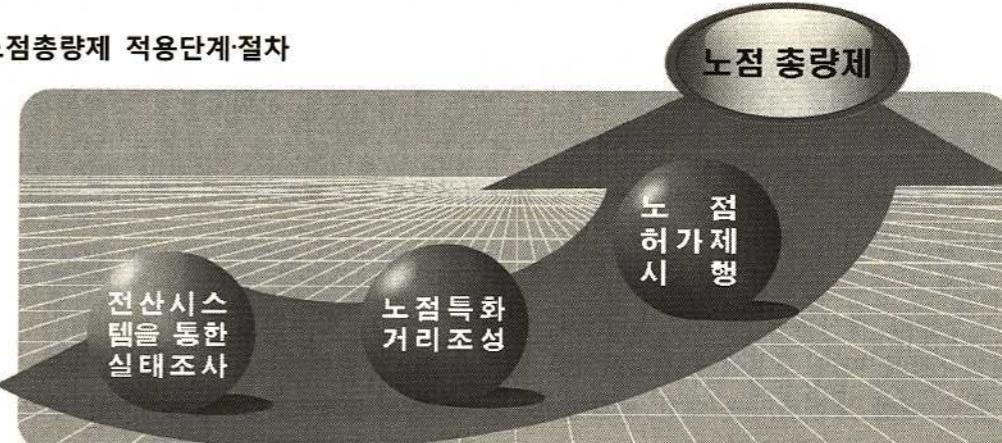
- 서울시 노점상정책의 가지적인 목표는 도시미관의 개선임. 도시미관 개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 이미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일제단속 전개.

- 하지만 최근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배경으로 하여 서울시는 과거에 비해 도시미관에 대해 광적인 집착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에 있어 문화, 생태, 디자인의 강조로 나타남. 서울시의 정책기조변화는 이명박 서울시정부에서 시작하여 오세훈 시정부에 이르러 서울시 주요 정책기조인 경제문화도 시마케팅으로 격상됨.

-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은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의 브랜드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 금융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도시공간의 문화·디자인화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을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였음. 따라서 서울시는 2007년도에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관리하고자 '노점관리대책'을 발표함.

#### 2)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 노점총량제 적용단계·절차



- 출처: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 2009

- 노점관리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규노점상의 진입방지, 노점상 대량 감축과 노점 디자인 규격화를 통한 도시디자인 개선임. 우선적으로 서울시는 신규노점상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점총량제를 도입하였음.

- 노점총량제는 기존의 노점의 총량을 관리하면서 서서히 감축하는 정책을 말함.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노점상의 대상을 공간을 점유한 기존 노점상(이하 기존 노점상)과 공간을 점유 못한 신규 노점상(이하 신규노점상), 이 두 분류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대책을 적용하고 있음. 첫 번째 대상인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두 번째 집단인 신규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간점유

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행정을 펼치고 있음. 즉, 신규노점역제와 기존 노점의 점진적 감축이 서울시 노점 총량제의 기본목표임.

#### □ 지속적 노점 감축방안

##### ① 신규노점 진입예방

- 특화거리 조성지역 외 노점 불허
- 신규 발생노점 적극정비

##### ② 정비대상 노점 지속감축

-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 정비대상 구분
- 정비대상 노점 분류가능
  - 1인 다수 노점 보유, 전매 · 전대 행위 금지
  - 운영자 지역제한 적용, 대형 · 기업형 노점
- 전업지원 : 취업알선, 창업 · 금융지원, 작업훈련 안내

##### ③ 자연감축분 정비

- 운영자 사망시 승계 불인정
- 준수사항 위반시 허가 취소

- 출처: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 2009 -

#### ▪ 기존 노점상의 감축은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됨.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간선도로변을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강제이전 시키는 조치임. 서울시는 주요간선도로변을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종로대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이 여기에 해당함. 서울시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서도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선포한 뒤, 노점상을 강제이전 시키고 있음.

▪ 두 번째 단계는 이면도로로 강제 이전한 후, 디자인·규격화를 통한 '노점합법화'의 단계임. 이들 합법 노점들이 장사하는 거리를 노점특화거리라고 부름. 합법화된 노점은 서울시 점용료조례<sup>2)</sup> 및 노점관리규정에 따라 구청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점용허가는 장소이동 금지와 영업시간, 물품, 규격 등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한 노점당사자의 동의가 전제조건임.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조례에 따라 제재 및 관리를 받게 됨.

▪ 점용허가의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취해짐.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 서울시와 지자체는 노점 운영자 사망, 영업중단 등을 계기로 노점의 자연소멸을 유도함.

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 □ 순환적 노점관리 프로세스 정립 ⇒ 노점 「인큐베이팅 접근」



- 출처: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 2009

서울시는 노점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서울시와 각 지자체 산하에 노점자율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노점자율개선위원회는 거버넌스 전략의 일환으로 공무원, 전문가, 학계, 의원, 주민 대표, 노점상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점관리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함. 하지만 노점자율개선위원회에서 노점상단체에 할당된 위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노점상대중의 이해가 관철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지자체의 노점관리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3) 신규노점상의 진입봉쇄

▪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신규노점상임. 신규노점상은 실직과 폐업으로 인해 노점을 갖 시작한 이들 뿐만 아니라 점유공간이 없어 이동하며 장사하는 이들을 지칭함. 이들은 기존노점상에 비해 대부분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이들의 진입을 봉쇄하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와 기초 자치단체는 단속행정만으로는 신규노점상의 증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노점상에 대한 일정한 회유(단속 유예)와 협박(단속)을 통해 신규노점상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음. 이런 단속 기조는 대다수의 기존 노점상들이 신규 노점상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봉쇄하는 동기가 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신규노점상이 기존 노점상에 비해 더욱 더 열악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신규노점상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무한 실정임.

#### 4) 각 자치구의 노점관리대책 사례

##### □ 종로구

- 2009 부터 2010년 4월 29일까지,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종로변의 노점상을 이면의 특화거리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음.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총 600여 노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면거리로 이전한 노점상은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에 맞게 디자인 규격화하여서 종로 가로변을 중심으로 총 7개의 노점특화거리로 배치되었음.

▪ 더불어 종로구청은 노점상이 사라진 종로가로변에 대해 녹색 공간 조성공사를 진행하였음.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이 사업을 '걷기편한 종로거리 만들기' 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된 일정아래 진행된 사업은 노점상 당사자들의 이해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음. 디자인과 도시미관에 대한 강조를 우선하여, 노점상의 이해에 대한 고려보다는 노점상의 강제이전과 노점의 규격화·디자인화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었음.

▪ 그 결과 이면도로로 이전된 노점상들의 생계는 극히 불안정한 상황임.<sup>3)</sup> 서울시는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 관악구

▪ 2008년 서울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악구청은 2007년 1차로 관악로 500m구간을, 2008년 2차로 700m를 디자인거리 조성구간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집행하였음.

▪ 2007년 9월부터 진행된 단속은 용역반을 동원한 물리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과태료·변상금, 고소고발 등을 부과 등을 통한 압박, 노점상들에 대한 회유로 노점상의 분열의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그 결과 60여 노점상이 노점특화거리로 재배치됨.

##### □ 강남구

▪ 2008년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구청은 강남대로의 강남역~교보타워거리까지의 구간을 디자인거리로 지정하고 노점상에 대한 강제이전 조치를 단행하였음.

▪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초강남지역연합회를 중심으로 노점상들이 저항하였지만 구청의 탄압과 회유로 인해 4개월간의 투쟁을 마무리하고 노점관리대책을 받아들였음.

▪ 우선 강남구청은 전 구에 노점허용구역과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구분한 후, 강남대로 디자인거리 조성 구간에서 영업을 하는 50여 노점상을 허용구역으로 이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음. 이전조치 후 노점을 디자인·규격화하는 방향으로 노점상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였음.

▪ 이면도로로 이전한 노점상은 기존에 비해 영업의 대폭 손실로 인한 소득 상실을 경험하고 있음.

이런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노점합법화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노점상에 대한 보호대책이라기 보다는 도시미화환경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책이며 이에 많은 문제점을 속출시키고 있다. 소수노점을 합법화시켜주는 대신 다수의 노점을 단속하는 방식

3) 이면도로로 이전한 노점상들은 과거에 비해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창경궁로에서 음료를 파는 음료를 파는 박모씨(66·여)는 "사람들이 통 없다. 자리를 옮기고 며칠째 개시도 못한 이가 많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하루 3만원어치는 팔았는데 지금은 7000원어치 팔기도 어렵다고 했다.

- 종로의 노점상들 '뒷길서 길을 잃다' 경향신문 환경상 기자 2009. 11. 18 -

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신규 노점을 강제적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고 이 합법화된 노점상들도 이면도로로 밀려나거나 장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지만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선급하게 정치적 과제로 노점상 합법화정책을 당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적으로 합법화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 즉, 노점상 주체들의 목소리를 모아가며 노점상들의 사회적 권리들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 5. 노점상, 도시에 대한 권리를 말하다

노점상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 혹은 시혜적 차원의 보호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도시의 역사 속에서 시민들의 자생적 생계수단으로 존속되어온 노점상들을 없는 사람인양 눈으로 가지고 쫓아내는 것은 아무런 답일 수 없다.

오히려 노점상 발생 배경과 이들이 처한 현실은 노점상들을 도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노동하는 주체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점상을 도시빈곤의 문제로 접근하여 할 것을 얘기한다. 이에 노점상들이 도시의 공공공간에서 함께 공존해 나가기 위한 도색이 필요하다.

##### 1) 노점은 불법 혹은 단속의 대상이 아닌 생계수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도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탄압만으로 노점상을 사라지게 했다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런 경우 노점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금 노점상이 늘어나게 된다.(IMF시 노점상 수가 급증함)

자본주의 도시 내에서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도시의 가난한 이들은 거리로 나와 노점을 펼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불법이라는 딱지보다, 폭력적인 노점단속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노점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점상이 되고 노점을 이용한다. 법보다 밥이라는 말처럼. 노점이 불법일지라도 이를 한 사람의 생계 수단으로 이 사회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노점상은 빈곤층의 생존권, 노동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노점상은 기존의 공식 노동자의 대열에서도 밀려나고, 자신의 가게를 내어 장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기에 거리에서 장사하는 비공식 부문(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자가 고용에는 임금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종속되듯, 누군가에게 종속된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형태의 범주가 있다. 후자의 형태가 바로 노점상이다.

2002년, 국제노동총회(ILO)에서는 '노점상을 포함한 비공식 경제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는 국제결의를 한바 있다.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노점상들이 (일반)노조 조직 속에 포함되어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행법상에는 노동권을 임금노동자에게 제한된 권리로 인식하지만 사전적이고 넓은 의미의 '노동권'인 노동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노동 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점상의 노동행위는 (공식)노동자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후의 노동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 노점마저 공식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노점 할 공간의 보장, 전기, 물, 가스의 원활한 공급 등 안정적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3) 탈빈곤과 복지적 차원에서 노점상 문제는 접근되어야 한다.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가구들은 국가의 지원이 없이 빈곤의 문제와 싸워야 한다. 노점상은 개별 가구들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노동안전망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 이들의 소득을 보면 대부분 차상위 계층 이하인 도시빈민들이다.

노점상들은 한결같이 노점상이 되고 싶어서 노점상이 된 게 아니라고 말한다. 누군들 현행법에서 단속의 대상이 되며 힘든 노점 일을 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이들이 처한 빈곤의 다양한 모습들이 결국 이들을 거리로 나와 장사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노점상问题是 단순히 단속이나 단기적 미봉책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점상들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함께 그들이 처한 다양한 빈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 활동에 있어 산재보험이나 저소득 노점상에 대한 보조금 제공, 재취업을 위한 용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교육, 보험, 신용, 보육, 문화, 주거의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출이나 일자리 상담 등 지자체 차원의 노점상 복지 지원정책이 있으나 대출한도도 매우 적고, 지원도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

### 4) 노점상, 도시를 점유하라

노점은 공공의 공간(소방도로)을 점유하고 장사를 하는 행위이다. 이는 부정적으로는 보행에 방해가 되며 주변 상가나 시장의 매출을 낮추며 도시환경미화에 피해를 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사실상의 노점단속 또한 이런 명목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노점은 도시공간을 다시금 재구성하고 공간으로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왔다. 노점은 보행자에게 길을 걷는 즐거움을 주고 죽은 거리를 살아있게 만들듯 사람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상권이라는 것은 상가나 가게점포가 홀로 만들어 온 것은 아니라 그곳에는 언제나 노점상들도 함께 하여왔다. 더욱이 재래시장의 경우, 가게점포보다 노점이 훨씬 많은 분포를 차지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권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 노점상-보행자-상가상인들, 거리에서 함께 공존하기

노점상이 보행자, 상가상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 한가. 도시공간을 점유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의 현실과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노점이 인정되는 사회는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노점상들의 생존을 인정하는 대신에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길을 가는 즐거움을 만드는 방식으로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행량, 보행에 적당한 길의 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노점마차 규격 및 위치를 조정하고 상가 및 주변 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노점품목 조정과 상권형성에 대한 노력, 그리고 길의 전체적 분위기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노점(마차)배치 등. 사실상 노점상이 거리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과 조정, 타협지점 들은 충분히 존재하며 노점단속을 당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미 이런 방식의 조정은 노점상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부분적이지만 자체적,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기도 하다. 오히려 이런 공존을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적절히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거나 단속의 대상, 도시환경미화를 위해 사라져야 할 존재로 만 여기는 것이 정부인지도 모르겠다.

#### ▪ 노점상, 도시를 점유하라!!

거리(소방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며 모두의 소유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래서 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최후의 공간되지만 거리는 이미 불법이라며 허락하지 않는다. 노숙인은 거리 위에서 자신의 잠자리를 펼치고 하루를 넘긴다. 마찬가지로 노점상은 마지막 생존을 위한 노동 현장을 '거리'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기 거리 위에서 빈곤을 부여잡고 생존하기 위해 노점자판을 펼친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거리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내어 붙인다. 거리는 모두의 소유지만 애초부터 가난한 이들의 소유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노점상들은 거리로 나와야 만 한다. 모두의 소유이고 사회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서라도 거리를 점유하고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쳐야 한다. 그래서 보행보다 도시환경미화보다 더 사람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노점상들은 이 거리에서 새로운 관계와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거리 위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 <참고문헌>

09 노점관리대책 및 실행계획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 2009

전국노점상총연합 (2008) 각 지자체별 노점대책 및 조례제정의 문제점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한 평가 및 우리의 대응 전국노점상총연합 2009

서울 남부지역노점상연합회 유인물 2008

종로 노점 떠난 자리에 녹색띠 들어서 아시아경제 2010. 1. 28

종로 노점상 특화거리 이전사업 마무리 연합뉴스 2010. 4. 29

종로의 노점상들 '뒷길서 길을 잃다' 경향신문 2009. 11. 18

#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 -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사례로

경희대 지리학과  
윤지환

## 1. 서론

현대의 도시공간에서 개인의 지위는 거대한 물결 속에 합류하고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뿐 그 어떤 구조적인 힘 없이는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 스스로 생성되어 공간적 영향력을 발휘할 칠나에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 사회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특권적 지위에 의한 힘에 의해 - 공간적 움직임은 개인의 의지와 일상적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때가 종종 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인 파급력과 공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의 힘은 맥을 추지 못하고 공간에서 잠잠히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조직되고 있는 도시공간의 양상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며 어떤 가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굳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현대 사회에서 우세한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영역은 쉽게 눈에 띈다. 아무리 일상의 힘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화적 가치들을 고민해보려 해도 현대 사회와 도시공간은 이에 대한 여유 내지 틈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의 상 층부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사항과 권력이 그만한 배포와 여유를 가졌다면 아마 도시 공간 조직은 지금과는 많은 부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성장을 함께 있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과거에는 설득력 있게 제기될 수 있었겠지만, 성장의 속도가 중요시되지 않는 지금의 사회에서 '성장을 위한 공간 조직'의 울림은 더 이상 공명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도시 공간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경제적 이윤, 정치적 의사 결정과 종교적 필요 등을 아울러 담아내는 용광로이다. 어느 한 가지 목적의 기형적인 돌출에 의해 다른 필요들을 제압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는 일종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매우 슬픈 일이기도 하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인들의 여가를 위해 공간은 많은 부분 그들을 즐겁게 해 주고 노동력의 재충전을 총족시켜주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 애쓰는 방법의 방향이 경제적 이윤 및 기회적 경향의 지배 아래에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도시인들이 얻고자 하는 즐거움은 환영적 착각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장세룡, 2005).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양식들마저 테마파크의 모형처럼 도시 곳곳에 배치된 상황은 우리가 가진 일상적 힘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개인의 차원에서만 미미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Sorkin, 1992) - 우리는 이에 대한 모습들을 남산 한옥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sup>.

1) 한옥마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시된 가옥들과 이벤트성의 전통 생활 양식들, 공연을 통해 가끔씩 확인할 수 있는 선조들의 음악과 유통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양식들이 우리의 실생활과는 매우 거리가 먼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주입된 기호적 요소들과 문화적 정체성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집단적 욕구들이 빛어낸 현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인식의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우리의

다양한 권력의 층위들에서 벌어지는 공간을 둘러싼 움직임들은 오늘날 도시를 움직이는 주된 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문래예술공단 역시 사회와 개인의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얹히고 설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의 공장들이 물러나고 대규모 상가와 아파트들이 건설된 과정과 아직도 문래동에서 생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소규모 철재공장들, 그리고 공장들이 물러난 자리에 자신들의 작업실을 마련하여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들은 문래동의 오늘날 풍경을 이루는 주된 요소들이다. 예술인들이 전유(appropriation)<sup>2)</sup>하고 있는 문래동 철재상가의 공간에서 지금도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일상적 힘들 내지 문화적 양식들은 앞으로 행해질 구조적이고 공간적인 움직임의 행보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는 앞에서 암묵적으로 언급했던 사람들의 축적된 일상적 힘<sup>3)</sup>과 그곳에 내재된 공간적 시사점을 밝히고, 지금까지 무감각한 상태로 지나쳐 왔던 공간 조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문래예술공단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공간이 생산<sup>4)</sup>되는 과정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거대 서사에 의해 수동적인 한계를 나타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소외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공간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 이론은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문래동을 바라보는 공간적 시각의 프레임을 정립하기 위해 르페브르의 공간 사상과 이론을 고찰한 후 문래예술공단을 전유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생각과 행위들을 생각해보면서 일상의 움직임과 생각들이 가진 공간 조직의 영향력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

## 2. 현대 도시환경과 공간생산 이론

### 1) 현대 도시 공간의 성격과 소외현상

현대 도시 공간의 특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르페브르가 가지고 있던 비판적 어조와 생각들의 대상으로서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적 양식들이 표출되는 대상으로서의 공간(Tuan, 2007: 253)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공간 조직을 바라봤을 때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은 전 세계적인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조합과 함께 하는 흐름을 유지하

일상은 문화적 양식을 만들어 낼 아무런 힘도 갖추지 못한 채 과거의 영광에 힘없이 기대고 있을 뿐이다.

- 2) 전유(appropriation)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개념적·물리적 실체를 자신의 용도에 맞게 도용(盜用)하거나 전용(轉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게 될 르페브르의 도시 공간 논의들은 '전유'의 개념적 틀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는 전유를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시키면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상상과 실천으로 인한 공간 활용과 공간 생산을 의미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르페브르는 일종의 규범화되고 계층화된 공간 체계와 종속적인 권리 관계를 허무는 데 실천되어야 할 행위로서 간주하였다.
- 3) 일상의 논의에 대해 지금까지 소홀했던 태도를 견지함은 주류 사회의 지속적인 경향이었다.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과 정치적 혜개모니의 확립에 있어 일상의 층위는 하찮거나 성가신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자 실제적 삶의 무대로서의 일상은 도시 공간 조직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추상적이고 거대서사적인 논의에 의한 사회 변혁의 한계를 지적한 사람들의 생각은 본 연구 주제의 한 축을 이루는 부분과 연결된다(Maffesoli, 1989; Lefebvre, 1961, 1968; Luckmann, 1989).
- 4) 지금까지 공간을 인식함에 있어 편만하게 확산되어있던 자세는 기호·언어에 기반한 해석학적인 기반이었다. 이는 공간을 '읽혀지고 해석해야 할 하나의 텍스트'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김남주, 2000: 64). "공간은 읽혀지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Lefebvre, 1991: 143)이라는 르페브르의 진술은 이러한 부분에서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 내린다. 결국 '생산'이라는 단어의 선택은 인간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실천 행위에 의한 공간 형성에 대해 르페브르가 가지고 있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 있다. 인간의 정신이나 물질적 세계의 모든 영역들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은 공간을 조직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윤 추구의 목적 아래 선의의 탈선마저도 냉정하게 외면해버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사용가치(Value in Use)과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의 개념은 의도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이미 당연한 것으로서 우리의 의식 구조를 형성한다 (Harvey, 1982). 후자의 개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공간 조직 양상이 가능해진 것은 공간의 상품화라는 의식적 틀이 주된 기여를 제공해준 덕분이었다. 경제 활동 상에서의 등가 교환(Exchange of Equivalents) 원리는 공간을 거래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는 인식적 틀을 제공한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은 공간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중간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상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공간을 인식하고 언어가 꾸며내는 공간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문을 펴보면 특정 공간에 대해 언론에서 수식하는 공간 이미지를 기정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낯설지 않다. 이는 그대로 공간 조직에 있어서의 인간 체험의 소외로 이어지며 모든 판단 기준의 참조사항을 기호와 담론에 의지하는 현상을 놓게 한다. 언어의 역할이 지금과 같이 막강해진 상황에 대해 르페브르(1968)는 “언어 과학은 특수한 미세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진술한다(Lefebvre, 2005: 218). 현대 사회에서 믿을만한 참조대상이 소멸된 결과는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인간 육체 감각의 소외를 일으켰고 기타 객관화된 담론과 기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을 맡겨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Figure 1. 도시공간의 스펙타클은 시민들에게 그럴듯한 구경거리와 여가를 제공하지만 그곳에 개인화되고 객체화된 활동만이 존재한다. (사진: 필자촬영)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판단과 체험에 대한 의지마저 끊여버린 현대인들에게 공간 조직의 막강한 권한을 줬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은 자신의 영향력을 필요 이상으로 남발한다.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 작업은 물리적으로나 담론적으로 전방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략적 행위이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 스펙타클이 조성된다고 해서 공간의 성격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호혜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희망은 행복에 대한 조건을 기반한다. 단지 교환가치의 상승에 의한 이

윤 추구의 윤활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공간 체험에 대한 우리의 감각 마저 언어와 지대(rent)에 의존하게끔 만드는 환각적인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공간을 매개로 한 지리적 활동에서의 수동적 자세는 이미지와 담론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조건이다. 관광은 ‘장소에 대한 진정하지 못한’ 활동으로, 개인적인 감상과 진정한 판단은 배제된 채 거의 항상 ‘전문가나 일반적인 의견’에 묻혀 버린다(Relph, 2005: 188). 라스무센(1964)은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주위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안내책자에 표시된 별표가 몇 개 인지만 확인하고는 서둘러 다음 장소로 향한다. 그들은 그 장소를 체험하지 않는다.” (Rasmussen, 1964: 16; Relph, 2005: 188에서 재인용) 이는 미디어나 상업화 주체에 의해 구현된 추상 및 기호학적 공간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장세룡, 2006: 297) 언어와 기호, 담론에 의지하는 사회 구성원의 지리적 활동은 결국 자본주의적 일상의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소비와 현대적 여가 활동은 인간의 즐거움에 대한 눈속임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원활한 생리작용과 유지를 도모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의 폭넓적인 기능을 앞세워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인 행위를 마비시킨다.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뿐리 깊게 자리잡은 소비와 담론의 지배는 공간 조직에 대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배제시키고 재현(representation)<sup>5</sup>의 문제를 단순하게 도식화시킨다. 도시 구성원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자유로운 소통과 재현을 통해 공간의 작품화(œuvre)를 이뤄야 한다는 현실 문제의 해결 의식은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을 관통하는 주된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공간의 생산

자본에 의해 조직된 생활 형태는 신체적인 욕구들의 불만을 내재화시키고 사물과 목표의 자기파괴를 수반한다. 소비의 덫에 걸린 공간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존재와 축적된 실체를 단지 “소비”만 하려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홍수” 속에 노출시킨다(Lefebvre, 2005: 171) 르페브르는 이러한 현대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양상을 극복하려는 주체적·실천적 의미로서의 ‘생산’을 주장한다.

공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공간생산이론에서 구조주의적이고 일상화된 측면의 모순된 개념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 사회의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언어적 구조의 힘을 인정하는 동시에 구성원 각각의 일상적 측면을 조명하면서 인간이 겪는 소외를 극복할 만한 돌파구를 찾는 작업을 시도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그의 이론을 정리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sup>6</sup>: 일상적 삶의 반복과 구조화된 사회 체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규범화되고 경험된 공간을 구축한다. 집단화의 과정을 통해 개별화된 움직임을 포용하며 연대의식과 규범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층위를 확고히 한다.

-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 사람들은 늘 일정한 기호·상징

5) 재현의 사전적 의미는 “감각 또는 지각에 의해 외적 대상의 심상이 주관에 따른 조합으로 재생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김남주, 2000: 71). 인간은 재현(representation)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간다. 재현에 익숙하지 못한 현대인들은 구조적 시스템의 순응을 통해 주입된 지식을 강력한 참조대상으로 삼은 채 공간을 수동적으로 체험할 뿐이다. 이는 공간을 조직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주체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부의 거센 물결 속에서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 여기에서 말하는 ‘실천’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통용되고 있는 저항적 성격의 ‘실천’이 아닌 일상의 삶을 구조화시키고 구성원들을 사회 체계에 순응시키는 단순반복적인 실태, 실상, 움직임 등을 의미한다(김남주, 2005).

체계를 고안한다. 지도나 언어에 의해 확정된 이미지는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구조를 결정짓는다. 이는 상징과 기호 체계의 영향 속에서 실천적인 움직임 또한 영향을 받게 되며 총체적인 흐름을 형성시키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모습들은 공간에 대한 일종의 ‘담론(discourse on space)’ 내지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전문가적인 지식 체계(expert knowledges that conceive of space)’를 요구하게 된다(Shields, 2005: 161)

· 재현의 공간(Spaces of Representation): 일정한 상징 체계와 담론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의 재현’과는 달리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체험(vécu)이 ‘재현의 공간’을 이루는 주된 틀이 된다. 이는 공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정된 인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상상과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공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규범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대 도시 환경은 ‘공간의 재현’에 의한 인식적 틀의 견고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사회적 시스템의 범주 안에서 행해지는 공간 활동의 양상은 쉽게 눈에 띄지만 그의 이면에 내재된 일상 생활의 공간적 틀은 우리의 시각에서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시 정부와 대기업에 의해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더더욱 이에 대한 시각의 유연함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의 구조적 체계에 집중되어 있는 시각적 편향성은 사회 구성원의 작은 몸짓과 행위가 만들어내는 의미들에 무감각한 한계를 드러낸다.

오래된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 특히 한국 사회에서 – 현대인들에게 교환가치적 기대를 품지 못하게 하는 공간은 측은함의 대상이자 담론의 철퇴를 가해야 하는 대상으로 비춰진다. 공간 안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성이나 체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사회 체제의 거대 서사에 굽복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래동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시스템의 거대 서사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던 공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래동의 모든 것들을 묘사한다면 공간조직의 단순하고 획일화된 시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공간생산 이론의 변증법적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러한 부분에서 유용한 인식적 틀을 제공한다.

사회에서 기대하고 예측하는 방향을 벗어난 행위들이 대중의 입맛에 맞는 틀 안에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입맛에 맞더라도 구성원들의 행위로 형성된 공간은 사회의 취향에 의해 쉽게 변질되기 쉽다. 사회적 시스템이 갖춘 고유한 상징 체계로 공간 이미지를 왜곡하는 작업들은 공간의 교환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와 함께 구성원들로 하여금 혼란한 여정을 거치게끔 만든다.

문래동으로 들어오게 된 예술인들의 공간에 대한 감각과 행위, 삶에서 드러나는 감수성은 공간 조직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에 대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축적되는 공간적 의미들은 일상에 무관심했던 사회의 공간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조직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문래동의 공간적 특성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예술인들의 일상적인 측면과 공간적 행위를 생각해 보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공간의 생산 과정 – 문래예술공단

#### 1) 공간을 둘러싼 움직임들

6,70년대의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등포 지역은 지금도 그 때의 흔적을 부분적으로 남기고 있다. 주변의 대규모 공장들이 90년대를 전후로 자리를 뜯 채 서울 외곽으로

이전했던 배경에는 서울의 산업 재구조화와 그 맥을 함께 한다(유환종, 2004). 제조업의 물결에서 벗어나 대도시 공간의 주거기능·서비스 산업에 대한 요구는 문래동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관습화된 실천(practice)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의 변화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아 버린다(Figure 2). 이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은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 내고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은 사회의 상징적 수단(image)을 통해 비난 받게 된다. 보편적 타당성의 부당함은 문래동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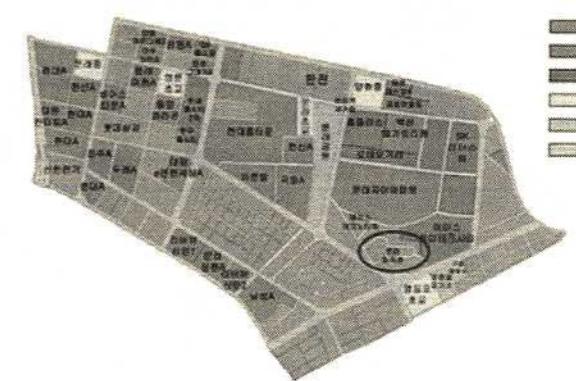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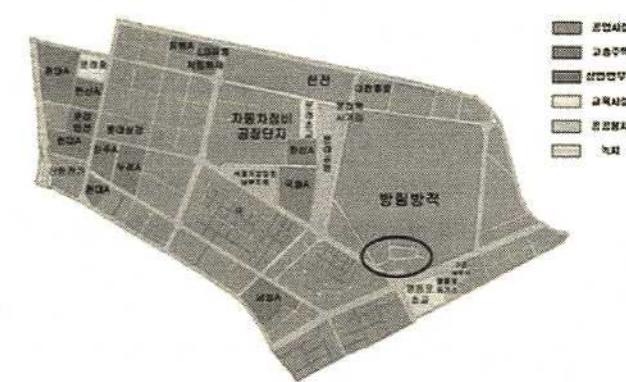


Figure 2. 문래동의 토지이용 변화(상: 1995, 하: 2009, 원 안은 철재상가 및 문래예술공단의 위치)

문래동이라는 공간을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공간 생산의 변증법적 관계들은 공간적 변화의 틀을 예상하고 주목할 만한 가치들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중요하다. Figur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래동의 대규모 공장들이 빠져나간 자리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들로 채워졌지만, 물리적 변화의 흐름이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철재 상가들은 저렴한 지대와 함께 예술인들의 유입을 이끌어냈다. 예술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발맞추기 시작한 미디어의 기사거리들은 문래동의 공간적 이미지에 대한 허황된 담론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Figur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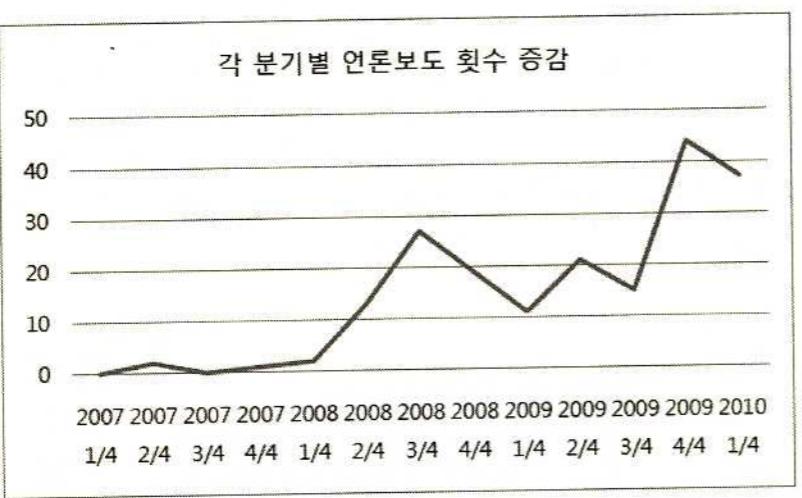


Figure 3. 각 분기별 문래동 관련 언론 보도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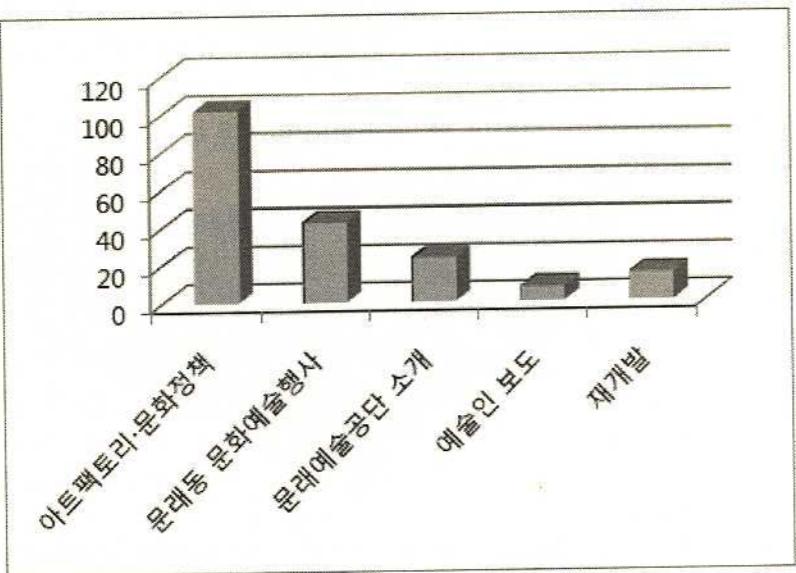


Figure 4. 내용별 언론 보도 횟수

언론에서 내놓았던 기사들의 대부분이 예술인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서울시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개요, 재개발에 무게를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 서울시 컬처노믹스 정책과 문화도시 계획에 대한 보도 내용들은 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도시 이미지 개선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문화의 새 옷 입고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시(2008. 4. 21 뉴시스)', '문화와 경제가 통하면 컬처노믹스(2009. 1. 29 경향닷컴)', '문래동, 도시재생의 최전선(2008. 6. 9 컬처뉴스)' 등의 보도 내용은 이러한 기대 심리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한국의 브롱크스(2010. 1. 29, 데일리안)', '서울 서남권 지역 활성화 기대(2010. 1. 29, 뉴스천지)' 등에서 도출되는 이미지들이 과연 문래동에 관해 얼마만한 공간 체험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심은 너무도 자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문래동에 대한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의 기대 심리 또한 단편적인 이미지와 기호적 시스템에 기대어 빈약한 공간적 판단과 가치 부여를 자행한다. 문래동 재개발 입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호의

적인 방향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2009)과 서울시 정책 이미지들의 문래동에 대한 청사진들, 방문객들에 의해 포스팅 된 블로그의 문래동 이미지들은 공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간파하고 주입된 상상력과 판단에 의해 공간을 왜곡하는 재현으로서 작용한다.

## 2) 재현의 공간

문래동에 모여 있는 예술인들의 시각이나 행위들을 앞으로 제시할 모습들만으로 가둬두는 것을 미리 막아두는 바이다. 문래동에 대해 단순히 작업실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는 예술인들도 있다. 연구자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보다는 문래동에 대한 고민과 체험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의 체험 행위이다.

문래예술공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예술인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떤 예술인들은 주변의 예술인들과 친목을 나누는 의미로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예술인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간을 전유하고 그 전유한 것들을 통해 삶의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재현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문래동의 환경적 요소를 자기 나름의 주관으로 상상하거나 해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철재상이라는 공간적 맥락이 없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철이라는 사물과 철공장 인부들, 철재상가의 독특한 환경과 분위기, 경관, 주변 예술인들과의 관계 등 모든 요소들을 전유하면서 자신의 작품과 삶 속에 이러한 요소들을 재현해내고 있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철재상가 지역은 아직도 활발한 생산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이지만 문래동의 몇몇 예술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예술적으로 전유하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들이 단지 예술인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문래동이라는 공간이 심미적으로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었다면 예술인들에게 별다른 영감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곁모습은 그저 곁에서만 맴돌 뿐 그것이 예술인들의 공간적 감수성이나 내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다른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거나 원룸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에 뭔가 영감을 주기에 훨씬 적합한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략) 여기 뭐 저희도 작업할 때 그 전에는 나무로만 하다가 요즘에는 철로 하는 것도 많아졌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도 달라지는…… 이 공간들은 이미 시간이 누적시켜 놓은…… 보기 드문…… 이제 비주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색다른 지금 비주얼 충격들을 받고 있고…… (중략) '예술가니까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치부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시 안에서 영원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디자인 작가 P씨)"

"원래 제가 스타트가 일러스트레이터고 용접할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할 일도 없는데 문래동에 있나 보니까, 좀 제가 확장해서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접도 하게 되고 1층에 가서 철 자재 사서 또 '이런 거 할건데 자재가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중략) 전적으로 하는 작업…… 함께 살아가고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서로 같이 만들면서 어쨌든 같이 해본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같이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테고 어떤 입장이 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을 조금 알게 됐을 때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담아냈을 때 오히려 더 재단되지 않고 다양성들이 다 담은 상태로 다음 행보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요. (일러스트 작가 U씨)"

문래동 철재 상가 지역에서의 예술인들은 공간을 전유하고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일상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틀 안에 간혀 직업적인 성향의 활동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회복하고 철재상가라는 환경적인 요소를 자신들의 창작 활동에 전유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래동 예술인들의 총체적인 행위들은 일상적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구성원들과의 관계나 전유를 통해 공간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모두 세입자의 신분으로 문래동에 있다. 자본주의 소유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들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교환가치)이 아닌 사용권(사용가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들의 공간 전유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읽어야 할 것이다. 컬처노믹스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기 위한 접근으로는 문래동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에 돈이 될만한 고가의 미술품이나 문화 상품(영화, 비디오, 캐릭터 상품) 혹은 문래동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된 명소 따위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래동에서 기대해야 할 것들은 이러한 실용적 목적의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생산되는 일상성의 가치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삶을 통해 현대 도시 공간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모든 실체들에 대한 전유를 통해 일상적 삶을 작품화(oeuvre)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 4. 결론

문래동에 모여있는 예술인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촉발된 사회적인 관심은 아직 이윤 추구적임과 제도적 습관화의 일관된 맹점 아래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소비 활동의 포섭만이 현대 사회의 유일한 여가로 여겨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도시 공간 조직의 패러다임은 기회가 닿는 대로 어설픈 무가적 이미테이션과 쇼핑 센터의 부조화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도시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은 정체된 상태에서 주체적인 공간 조직의 틀을 마련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문래동에 모여있는 예술인들의 철재공장 환경에 대한 전유 행위는 이에 대한 경종의 좋은 시도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간과 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이를 자신의 재현 행위에 활용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행위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사회 구조에서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토록 문화의 힘과 중요성을 의치는 사회이면서도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생산 양식과 공간 조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소비문화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는 일상적인 삶의 피폐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생산양식의 전문화로 인해 사람들은 양식(style)이나 예술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모두 소비 활동으로 충족될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으로 인해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신체적 욕구에 대한 욕망을 억압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삶이 극복되기 위해 르페브르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술적으로 전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efebvre, 2005: 177). 육체는 현실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시간, 사물, 공간, 자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상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강하게 규범화된 공간 안에서 사회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어쩔 때는 폭력도 불사한다. 소비 행위는 이러한 강압적 분위기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해방적 출구로 기능하긴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소비 활동으로는 일상적 삶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심미적인 환경 정화만을 이룬다고 해서 일상적 삶이 아름다워지거나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Ibid: 352). 요즘 들어 지자체마다 행하고 있는 거리 경관 정비나 디자인 개선 사업들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이룰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작품화(oeuvre)를 이룰 수는 없다. 시·공간적 맥락이 없는 아름

다움은 모조품이고 겉껍데기에 불과하다. 자신이 속한 공간에 시간의 흔적을 쌓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식(style)이 될 수 있고 작품(oeuvre)이 될 수 있다. '작품'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문화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Ibid: 355).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시간, 공간, 육체, 사물)들을 전유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그것들을 공간에 투영하여 주변의 것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현대의 꽉꽉한 도시적 삶에서 필요한 행위 중 하나이다. 문래동의 예술인들이 행하는 공간 행위의 사례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경종이자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강 외, 2009, 『서울시 창작공간조성을 위한 문화생태계조사』,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남주, 2000, “앙리 르페브르의 재조명;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공간과 사회*, Vol. 14, pp. 63-78.
- 로브쉴즈, 조명래, 2000, “앙리 르페브르: 일상생활의 철학”, *한국공간환경학회*, No. 14, pp. 10-35.
- 유환종, 2005, “서울시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토지 특성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Vol. 38, No. 4, pp. 393-401.
- 장세룡, 2005,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 문화이론적 접근”, *호남사학회*, Vol. 25, pp. 283-317
- 2006,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와 경계*, Vol. 58, pp. 293-325.
- Harvey, 1982, 『The Limits to Capital』, Basil Blackwell, Oxford, 최병두 역, 1995, 『자본의 한계』, 한울.
- Lefebvre, H. 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té』, Paris: L'Arche Editeur, Moore, J. with a preface by Trebitsch, M. (trans.)
- 2002, 『Critique of Everyday Life』, Verso.
- 1968,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Editions Gallimard,
- 박정자 옮김,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 Luckmann, T. 1989, “On meaning in everyday life and in sociology”, 『Current Sociology』, Vol. 37, No. 1, in 김희재 역, 1995,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pp. 80-95.
- Maffesoli, M. 1989,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Epistemological Elements)”,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 37, No. 1, in 박재환 역, 1995,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pp. 44-65
- Rasmussen, S. E. 1964, 『Experiencing Archite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김덕현 외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Shields, R. 2005, 『Lefebvre, Love and Struggle』, New York: Routledge.
- Sorkin, M., ed. 1992, 『Variations on a Theme Park: The New American City and the End of Public Space』, New York: Hill and Wang.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구동희, 심승희 옮김, 2007, 『공간과 장소』, 대윤.

### 도시권과 식량권의 결합: 도시 먹거리체계와 먹거리계획의 의미

허남석 (충남별전연구원)

## 제 6 부 : 도시와 인권의 만남

사회 :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

- 미류 (인권운동가·평론가) ‘인권’과 ‘도시’는 만나야 한다
- 고은태 (중부대 교수)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보호 기능성 텁색
- 김중섭 (경상대 교수) 인권도시 만들기와 인권조례 제정운동 :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인권'과 '도시'는 만나야 한다

미류 (인권운동시정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인권운동에 '공간'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점차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간'과 관련한 대표적인 인권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노동에 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가속화된 전지구적 이주노동은 인권담론에 공간적 '경계'의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시민권의 공간적 경계의 문제는 '시민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인권운동은 여전히 그 해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와 조금 다르게 도시개발의 추진 역시 '공간'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 그동안 인권운동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행을 주로 다루며 철거민의 권리를 옹호했다. 그러나 강제퇴거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개발구역에 들어와 장악하기 전에 이미 개발 자본에 의해 장악된 도시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다. 이 글은 인권의 실현을 위해 '도시'를 고민하게 되는 조건, 그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와의 접점을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 1. 도시에 대한 권리

르페브르는 1968년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자본이 지배하는 도시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현수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공간과 사회 2009년 통권 제32호)에 따르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작품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유의 권리를 포함한다. 도시는 그 곳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집합적 작품이다. '작품'은 완성되어 교환되는 것이기보다,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활용되는 것으로서, 르페브르는 도시의 사용가치를 부각시킨다. 전유의 권리는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 만남과 교환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생활 리듬과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 등으로 풀어볼 수 있다. 참여의 권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규정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권리이다. 이후 르페브르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차이에 대한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로 도시권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집합적 권리이면서 집단 안에서의 차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제3세대 인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인권담론 안에서 발전한 개념은 아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가 권리담론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인권의 가치와 어떻게 만나고 가로지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르페브르 이후로 다양한 학자들이 도시권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는데, 인권운동은 이런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주목해야 한다. 도시권에 대한 논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며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과 도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흐름과, 특정한 공간적 경계를 통해 구성되는 시민권 개념 비판에 초점을 두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도시권을 화두로 열린 장에서 도시와 인권은 끊임없이 부딪치며 만나게 될 것이다.

## 2. 누가 도시를 점유하는가

주거권은 다른 권리들보다 ‘도시’와 자주 만나는 영역이다. 주거권의 의미 안에 이미 주택의 위치나 문화적 적절성 등의 내용이 들어있고 주택 자체가 특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숙인의 경우는 주거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주거권의 내용을 통해서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홈리스는 살만한 집에 살지 못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그 중 노숙인은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가는 홈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에서 홈리스에 일정한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노숙인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서둘러 실내로 옮겨지기도 한다. 이것은 거리로부터의 ‘배제’이기도 하다. 노숙인들이 ‘살만한 집이 없는 상태’라는 홈리스의 정의로부터 접근되지 않고 ‘거리에서 사는 상태’라는 현상을 통해 접근될 때, 이들은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된다. 공공역사나 지하도 등에서 노숙인들이 숙식과 생활을 하는 것은 비노숙 시민들의 점유 공간에 대한 침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각 지자체들은 쉼터 입소 위주의 정책을 수립하고 노숙인들의 쉼터 입소를 독려 또는 강제한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자유롭지 않은 생활 규칙과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쉼터 입소 정책에 불만이 많다. 노숙인들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거리라는 공간에서 그 공간의 점유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공공의 장소는 공공의 장소를 이용하거나 점유하는, 그리고 이용하거나 점유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고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조화롭게 엮어져야 한다. 또한 이때 공/사 이분법의 구도를 넘어서는 접근도 필요하다. 숙식은 사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공적인 공간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하는데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사 구분에 갇히지 않는 전유를 주장할 실마리를 건넨다.

## 3. 누가 도시를 계획하는가

주거권 교육을 하면서 주거권의 내용을 꼽아보면 집단별로 몇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그 중 여성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안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여성들은 집을 구할 때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은지, 골목이 너무 어둡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따진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주택에 대한 접근만으로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시가 누구의 시선에서 계획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견기도 공간을 전유하는 행위다. 도시와 공간에 대해 젠더화된 이용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대안개발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성북구 장수마을의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거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이 동네는 구릉지에 매우 낡은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으로, 2004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3년 전부터 이 동네에 대안개발을 궁리하는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자본의 힘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도시가스 역시 주민들이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라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입장이었다. 도시계획이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지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살만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 4. 누가=어디에

도시는 점유나 계획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점유나 계획의 주체인 사람과 배타적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없다. 삶은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런 공간적 특성이 삶과 강하게 맞물려서 드러나기도 한다. 개발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동네는 소득 1~4분위 계층이 70%가 넘는다(2007, 서울특별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를 허물어,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들을 지어올리는 것이 현재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낮은 재정착률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쫓겨나는 사람들 안에도 다양한 정체성들이 섞여 있으며 개발 구역은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다.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계획은 청량리 민자역사를 지으면서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는 계획이었다. 청량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들은 대부분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유리방’이나 쪽방 형태의 공간에서 주거와 동시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이 곳은 원래 살던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현재의 정책 방향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사라져야 할 공간이고 ‘성매매’는 지워져야 할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성매매여성들은 자신의 주거 공간을 드러낼 수 없고 그 공간을 통해 만들어졌던 사회적 관계망들 역시 쉽게 삭제되어 버린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노동권을 통해서 성매매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도시 공간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무력해지기 쉽다.

청량리 집결지에서 성매매여성 상담·지원 활동을 해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은 최근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의 기록을 담은 <불온한 확신, 끝나지 않은 천일야화>를 발간했다. ‘이름’은 책을 통해 “특정 공간을 매개로 기억된 경험, ‘의미 있는 공동의 기억’, 즉 역사가 사라지고 단절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개발의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어떤 공간에 재정착을 하더라도 그 공간은 그녀들의 삶의 경험과 역사를 버림으로써만 접근 가능해진다. 이처럼 개발은 도시 공간을 바꾸는 것인 동시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간의 재편에 따라 삶이 바뀌는 구조를 뒤집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의미 있는 공동의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공간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출발점이 도시에 대한 권리일 것이다.

## 5. 자유가 분출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광장’은 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과 같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공간으로서의 ‘광장’ 역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최근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은 서울광장 맞은편의 재능교육 건물 앞에서 농성을 한다. 유령 집회 신고와 사측의 가압류 등의 탄압에도 끊임없이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이들에게 재능교육은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1인 시위로 혼자 농성을 할 때 햇볕가리개나 바람막이, 깔개 등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은, 피켓 금지나 100미터 반경 접근금지와 같은 이전의 가처분과는 또 다른 탄압이었다.

집회나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공공 공간에서 끊임없이 배제되고 있는 현상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그러나 집회시위는 ‘공간’에 대한 개념과 무관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즉, 어디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가는 집회시위의 자유에서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통해 제한되거나 억압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광장조례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간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음으로써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집회나 시위뿐만이

아니다. 2009년 서울시는 청계광장에 대한 관리 규정을 들며 인권영화제 불허를 시도했다. 시민사회의 항의로 인권영화제가 예정대로 청계광장에서 열리기는 했지만 광장에 대한 접근이 억누르려는 것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그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간에 대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자유라는 가치의 핵심적 의미다. 야마티아 센은 개인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를 요청한다. 우리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6. 도시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데이비드 하비는 도시가 정치적 계급투쟁의 핵심무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도시 공간을 통해 강탈적 자본축적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공간은 사고파는 상품으로 순수하게 추상화되고 공간의 거래는 이윤 창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개발은 하비의 주장처럼 저항에 부딪치는 핵심적인 국면 중 하나다. 물론 자본축적의 논리와 공간의 논리는 아직 충분히 융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이 공간을 이윤 창출의 매개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도시’에서 인권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한다. 도시는 어떻게 계획되고 구성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녀들의 권리를 헤아리는 과정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인권은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보여준 ‘사람을 위한 도시’를 상상하기 위한 출발선 이기도 하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법도 도시와 인권이 만나는 장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그 중에서도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으며 재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심으로 개발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어떻게 계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시골과 대비되는 개념이기보다 다양한 경계를 통해 구성되는 지역이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이 변화하는 속도나 방향에서 도시와 시골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도시의 개념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확장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하다. 다만, 도시들 간의 격차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 세계 여러 도시의 도시권 현장이나 도시법 제정 운동을 주목하는 동시에 주의해야 한다. 도시들 간의 불균등 발전은 다른 도시들에 대한 권리의 착취에 기대고 있기 쉬운 탓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시야가 도시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세계화 시대에 ‘지역’을 주목하는 도시권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놓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에 대해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이것은 앞으로 끊임없이 밝혀져야 한다. 도시를 사용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동시에 공간을 통해 늘 마주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다수결의 민주주의를 통해 도시를 계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권의 가치를 향한 도시의 생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딪치는 재산권과의 충돌 등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당장 옹호되어야 할 권리이기보다는 계속 탐구되어야 할 권리다. 이 과정은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접근할 때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접근의 출발선은 도시에서 어떤 권리가 억압당하고 어떤 저항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을 것이다.

##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보호 가능성 탐색

고은태 (중부대 교수)

###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보호 가능성 탐색

“도시와 경의, 도시와 권리” 학술대회

2010.12.3

고은태

## 왜 이 시점에서 인권과 지자체인가

- 인권에 관한 한 앞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 민선5기를 맞는 지방정부 /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진보적 지역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할 필요성

## 간략한 역사

- 1987 이전: 인권운동이 비교적 고립되거나 전체변혁운동의 일부로 복무하던 시기
- 1987 6월 민주항쟁, 노동자대투쟁: 합법공간의 확대, 새로운 방향과 조직의 필요
- 1991 소련 및 사회주의권 붕괴: 외부로부터 강제된 변혁운동의 재편, 인권운동의 독립
- 1997 IMF 외환위기: 후속세대의 실종, 사회적 분위기의 급변, 변화를 위한 동력의 상실
- 200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운동의 역할에 대한 질문,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인권의 진전
- 2008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행동하는 개인들의 존재 확인, 조직적 한계의 노출
- 2009 용산참사: 명확히 드러난 시민들의 무관심
- 2010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 인권보호체계의 빠른 후퇴

## 현재의 인권보호 상황

- 인권보호를 위한 주요 논의와 결정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짐
- 인권운동의 현황 - 현장에서의 대응활동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접근
- 지방에도 인권운동이 존재하나 자체적 역량의 부족 및 독자 의제 생산의 빈곤
- 기존의 인권보호체계가 후퇴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
- 범람하되 희박해진 인권이라는 단어 - 시민들 결집의 어려움
-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간의 균열

## 지자체 차원에서의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가능성

- 국가차원의 인권보호가 중앙정부 쟁탈을 위한 정치적 변화의 종속변수화
- 모든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돌파를 시도해야 할 당위성
-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 참여적 정부운영의 과제
- 저성장 시대의 지방정부 운영방향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대두 - 직접적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지방
- 기존의 지역정치와는 다른 균열된 지방정부의 등장 / 주요이슈에 있어서의 중앙-지방의 불일치

## 지자체 차원의 인권운동을 위한 질문

- 국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인권기준이 가능한가
- 지자체는 이를 실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이러한 변화를 끌어낼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가
- \* 해외사례: 당위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신호

##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의 과제

- 지자체 차원에서의 인권기준에 대한 합의 (밑으로부터/위로부터)
-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전략의 마련 (적극적 보장/소극적 보장)
- 인권보호에 있어서 각 주체별 역할의 분담
-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의 수립과 실천
- 인권보호 체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주민주도적 참여활동

##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비

- 인권보장을 위한 주체의 구성 (정부, 시민, 시민단체, 학계)
-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기초한 인권보호 방식의 연구
-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인권의식 고양
-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 차원의 연합 구축
- 지방에서의 인권보호의 법률적 효력 검토
- 중앙-지방의 권한 및 예산에 대한 조정 모색
-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간/국제적 연대 활동
- 적절한 지자체의 선정 및 역량의 집중
- \* 행동을 위해 모든 항목이 필요한 것은 아님

## 교두보의 건설 혹은 경쟁적 복지로의 추락

- 인권의 보장이 지방정부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으로 귀결될 것인가
- 혹은 지역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권의 보호가 이루어질 것인가

## 인권도시 만들기와 인권조례 제정운동 1):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문제 의식

인권 실행의 증진은 전지구적인 인류 사회의 과제이다. 이 과제의 주요한 실현 방식으로 삶의 현장인 지역 공동체의 인권 보호 증진 체계 구축을 주목하게 된다(김중섭, 2006; Joong-Seop Kim, 2010). 지역 공동체의 인권 실행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인권도시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여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인 ‘인민인권학습운동’의 활동 등 ‘인권도시’ 건설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운동은 도시간의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인권 존중을 선언하고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참여 도시가 세계 20여개에 이를 정도로 인권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권조례 제정이 도모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인권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운동 역시 지방자치발전의 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部落解放基本法制定要求 國民運動中央實行委員會 엮음 1994; 部落解放研究所 엮음 1997; 部落解放人權研究所 엮음 2003).

지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김중섭 2001; 2006). 인권 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 체계 구축,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연대를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과 더불어 인권 실행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범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곧, 지역 사회에서의 인권 실행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인권조례 제정을 주목하게 된다.

조례 제정은 자치입법권의 실행을 의미한다. 곧,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의 통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은 지역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현상이며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활발하다는 것은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며, 조례 제정 운동은 사회 민주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지역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것은 지방 정부의 운용 형태가 관치형 중앙정부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요구와 참여가 지역 민주주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며, 또 지역 민주주의의 척도로 인식되는 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이므로 인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지역 사회운동 형식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추진하였던 진주시 사례는 인권에 대해 이해 수준과 지역 민주주의 실행 상황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하여 지방 자치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의 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진주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진주는 인권 발전에 기여한 형평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한 곳이다(김중섭 1994). 그러한 역사적 유산을 활용하여 인권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인권도시를 만들어가자는 활동이 전개된 곳이다(김중섭 2006). 이러한 배경에서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이 시민단체에서 제안되었다.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진주시 인권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진주시의회에 상정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다가 해당 시의회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이 연구는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어떤 과정에서 전개되었으며, 또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이 왜 지체되고 좌절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社会의 역량 등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운동 사례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지역 민주주의 상황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 사회운동의 과제를 가늠하는 사회학적 분석의 중요성이 갖게 된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는 진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인권 실행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김중섭, 2006), 2007, 2009)나,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의(이혜숙, 2009; 조상균, 2008, 2009; 문은현, 2009) 등이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사회운동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글쓴이는 지역 공동체의 인권 실행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김중섭 2006),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현황에 대한 연구(2007), 그리고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2009)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 과정과 밀접하게 이어서 진주의 인권조례 운동을 정리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 2. 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배경

지방 자치제가 발전하면서 지역 사회의 범인 조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곧 조례 제정은 자치입법권의 실현이며, 그러한 권한의 확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제의 발전 역사가 짧은 한국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조례의 대부분은 상급 법률에 근거한 이른바 ‘판박이 조례’였으며, 단체장의 필요에 따른 조례 제정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지방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많지 않다. 그 결과 지역 민주주의 발전은 더디게 발전하고, 지자체의 운용 실태는 관치형 중앙정부의 축소판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조례 제정 운동은 지역 민주주의의 출발이며, 사회 민주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조례 제정은 지역 민주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지역 사회에서의 실행 수준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김중섭 엮음 2001; 2002).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선언이나 인권협약이 발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헌법과 각종 법률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강구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는 인권이 위협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지자체 차원의 범인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방 자치 발전과 인권 증진을 함께 도모하는 방안으로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출발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진주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조건이 작용하여 인권조례 제정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작용하였다. 진주에서 벌어진 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발전과 조례 제정의 상관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진주 지역의 인권운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62년에 전국적인 농민항쟁에 불을 지핀 진주농민항쟁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가장 차별받던 백정들의 해방운동을 주도한 형평사가 1923년 진주에서 창립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여 진주 주민들은 형평운동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진주농민 항쟁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김중섭 2006). 진주지역에서 일어난 유치원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된 시민단체의 활동은 여성민우회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그 배상금의 일부를 씨앗으로 기금을 모아 '진주여성평등상'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 11회째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나 개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그리고 형평운동 기념탑 건립을 계기로 시작된 진주지역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진주인권회의는 해마다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권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진주의 특성을 살려 역사도시, 인권도시로 진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은 2005년 진주문화연구소 창립과 진주인권회의 상설 기구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5년에는 17개 시민단체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인류 사회가 인권의 보편성을 약속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진주인권사랑 한마당을 마련하였다. 이 단체는 그 이듬해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앞으로 '인권진주협의회'로 줄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주인권사랑한마당을 지속해 나갔다. 참여 단체는 25개 단체로 늘어났으며, 진주인권사랑한마당은 2010년 현재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인권진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여성, 교육, 노동, 장애인 등과 같은 인권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진주YMCA, 진주YWCA 같은 시민단체, 약사회, 한의사회 같은 직능 단체 등 활동 내용이나 목적이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 탓으로 결속력이 느슨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인권진주협의회는 진주를 인권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에 찬동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지역 사회운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진한 상황에서 인권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은 여전히 막연한 과제이며, 성과에 대한 회의도 제기되었지만, 형평운동의 발상지 진주는 인권도시가 될 만한 당위와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 단체의 다양성과 성격 탓으로 단체들의 참여 수준은 제각기 달랐다. 또 진주인권사랑한마당이라는 행사만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인권 실행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되기 될 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을 지역 민주주의의 주요 기준이며 과제인 조례와 연계하여 인권조례 제정이 제안되었다. 인권조례 제정의 제안은 민주주의 사회는 법의 통치라는 일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깔려 있었다. 곧,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에게 인권 보호와 증진의 실행 책임을 명확히 밝히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제2회 진주인권사랑 한마당을 마친 평가회에서 '진주시인권조례' 제정이 2007년의 주요 사업으로 제안되어 채택되었다.

인권조례 제정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모인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는 사업의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제1회 집행위원회(2007년 1월 31일)에서 거듭 2007년 활동방향을 논의하며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습을 과제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으며, 제2차 집행위원회(2007년 2월 27일)에서는 "(가칭)진주인권조례 제3회 '진주 인권사랑 한마당' 개최"를 신청한 것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 계획에 따라 진주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워크숍, 시민토론회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007년에 매달 부문별 인권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월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 및 결혼 이주여성 인권(발표: 박영선 YWCA 사무총장, 이돌녀 간사), 이주노동자 인권(발표: 김희아 카톨릭노동상담소 간사), 4월 장애인과 인권(유순자 내일을여는멋진여성회 경남지부장, 정충제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6월 학생, 어린이 인권 (황은득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장, 배경환 전교조 진주지회부회장) 7월 여성 인권 (강문순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성과 가족 상담소 운영위원, 정윤정 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적었지만, 활동가들 중심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진주지역의 인권 상황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진주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2007년 9월 19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가 열렸다. 이 자리의 의제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발제 황은득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진주지회장, 토론: 홍순찬 진주장애인복지센터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인권(발제 요약 및 토론 권춘현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저소득층 인권(발제 강기동 진주지역자활센터 팀장, 토론 박종철 진주연대 사무처장), 여성 인권(발제 강문순 진주여성민우회부설 성과가족상담소 운영위원, 토론 김미선 전교조 진주지회 사무처장), 결혼 이주여성 인권(발제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 토론 윤종호 진주문화연구소 사무처장) 등이었다.<sup>2)</sup> 그리고 진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주제: 지역사회 인권증진과 조례 제정, 2007년 10월 17일, 장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발제자로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진주인권회의 의장)과 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국장)이 초청되어 이론적 배경과 목포시의 사례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시의회와 시민단체 관련자인 정대용(진주시의회 의원)과 권춘현(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이 의견을 개진하였다.<sup>3)</sup>

그리고 11월에는 일본의 사례를 듣기 위하여 전문가 초청 행사를 열었다. 인권활동가 워크숍을 열었으며(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07. 11. 10, 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발제: 토모나가 겐죠(友永健三,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소장) 주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NGO의 역할), 또 인권 조례 관련 일본 전문가와, 지역의 시의원과 울산 지역 활동가를 초청하여 토론회(주제: 일본의 인권조례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07. 11. 12, 장소: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 발제: 토모나가 겐죠(友永健三,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소장), 제언 발표: 강민아(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를 가졌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제3회 인권사랑한마당에서 보고되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이 지속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모한 인권단체 협력 사업으로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기반 조성'이 선정되면서 활동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활동의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워크숍, 모둠별 인권조례 준비모임, 전문가 초청 강연회, 선진지역 방문, 시민토론회 등이 계획되었다.

집행위원회들은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워크숍을 가졌으며 (주제: 인권조례 제정 사업의 전반적 검토, 3월 24일, 장소: 예닮), 4월에는 모둠별 인권조례 준비모임을 가졌으며(4월 7일, 장소: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여성 장애인 활동가며 국회의원인 장향숙을 초청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4월 23일, 장소: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강당, 주관: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주제: 차별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기회가 되었지만, 각 분야별 인권조례를 논의하기로 한 모둠별 활동은 그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5월에는 집행위원회들을 중심으로 광주직할시를 방문하여 인권 활동 선진 지역의 사례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주최하는 활동가 워크숍(주제: 지자체 조례에의 인권적 접근 모색, 5월 16일-17일)에 참석하여 진주지역의 활동이 의미있다는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워크숍을 가졌다.(5월 27일, 장소: 채송아트홀, 주관: 진주인권회의, 주제: 진주시 인

2) <진주인권조례를 준비하는 시민토론회> (2007. 9. 19) 자료집 볼 것.

3) <진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2007. 10. 17) 자료집 볼 것.

권조례와 결혼이주여성정책, 발제: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토론: 양해영(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선(진주 YWCA 사무총장), 정경우 (진주문화연구소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 담당)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4차례(9월 17일, 10월 1일, 10월 15일, 10월 29일)에 걸쳐 인권 시각에서 진주시 조례를 검토하는 워크숍이 열렸다(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11월에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1월 14일에는 인권활동 선진지역의 사례 조사를 위하여 부산을 방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아시아 공동체학교, 부산민주공원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졌으며(장소: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발제: 이기동(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양해영(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선(진주 YWCA 사무총장),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1월 22일에는 진주를 방문한 일본 토쿠시마 인권학습 기행단과 국제 교류모임을 가지며 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기회를 가졌다(장소: 경상대학교, 진주문화연구소).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진주산업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제4회 진주인권사랑 한마당에서 '진주시인권조례'(안) 공표하게 되었다.

### 3. 인권조례 안의 성립과 내용

2008년 12월에 공표된 진주시 인권조례안의 성립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특기할 만한 하다. 우선,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단체의 상임활동가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들 중심으로 워크숍, 시민토론회, 초청간담회, 선진지역 방문, 국제교류, 진주사랑한마당 같은 여러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권조례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게 되었다. 조례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인권조례'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 인권조례 제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는 진주가 인권도시가 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막연한 자부심이 저변에 깔려 있었으며,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추진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2년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사업 진행의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일의 지속적인 추진에 작용하였다. 국가기관과의 '약속'이라는 족쇄가 없었다면 도중에 중단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던 활동가들이 개인적인 어려움 탓으로 중도에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다른 활동가들이 대신 참여하며 일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진주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인 약속 이행이라는 책임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sup>4)</sup>

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되었다. 우선, 조례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례는 근거와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는데, 진주시 인권조례는 실현 가능한 목적이 무엇인가 지적될 수 있었다. 과연 인권 보호와 존중을 강조하는 선언적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인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했다.

그리고 인권조례에서 설정하는 인권의 성격을 대한 합의도 필요했다. 곧,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어떤 성격의 인권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주민 전체의 인권을 위한 포괄적 인권조례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 취약 대상자나 분야를 대상으로 부문별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4) 대표적인 보기로서, 인권조례 제정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던 윤종호(진주문화연구소 사무처장), 석선옥(진주인권회의 운영위원), 정충제(진주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이 여러 사정으로 중도에 일을 그만 두었으며, 그 대신에 이기동(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이 인권조례팀장을 맡아 일을 계속 이어갔으며, 정윤정(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같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있었던 것이다.

으로 생겨났다. 장애인, 외국인 주민 같은 인권 취약 집단에 대한 부분별 인권 조례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게 되었다. 비록 선언적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인권 조례 제정은 인권을 지역 사회의 중심 가치로 삼기 위한 장치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진주시 인권조례의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인권조례 안에는 인권정책의 기본 이념, 시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진주시인권위원회 설치, 인권기금 조성, 인권센터 설치, 인권교육 실시,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인권백서 발간, 인권부서 설치, 인권기구 협력 등을 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주시의 조례를 분석하며 인권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 글쓴이의 논문(김중섭 2007)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사례로 참고하였다(토모나가 겐조 2007; 部落解放基本法制定要求 國民運動中央實行委員會 엮음 1994; 部落解放研究所 엮음 1997; 部落解放人權研究所 엮음 2003).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공표한 진주시 인권조례안의 개념들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았으며, 인권영향평가 같이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미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설정해 놓자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 4. 인권조례 추진 과정

시민단체에서는 2008년 12월에 인권조례안을 공표하였지만, 이것이 조례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진주시의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조례 제정권은 시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례 발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시장의 발의, 시의원 발의, 그리고 주민 발의이다.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주민발의 방법이라고 인식하였지만, 현실적으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시장이 발의할 가능성은 아주 낮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조례의 취지를 이해하는 시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선정하여 부탁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곧, 대표 발의하는 시의원이 재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발의하는 우회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다. 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경우에는 인권조례안의 발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시의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유념하였으며, 조례 안의 발의 과정에서 상호 의견 파력을 통하여 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 시민단체에서는 양해영 시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선정하였다.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양해영 시의원은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 의원이었으며, 제5기 진주시의회 하반기 운영위원장은 맡고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다. 전체 시의원 21명 가운데 20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양해영 시의원 사이에 최종 시의회에 접수할 안을 조정하게 되었다. 양해영 시의원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은 시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시민단체 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다. 예를 들어, 인권센터 설립, 인권기금 설치 및 운영, 인권부서 설치 등이 그 대상이었다. 양해영 시의원은 진주시 담당자 및 진주시의회 전문위원회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실현하기 힘든 내용을 계속 지적하였다. 실현 가능한 안을 발의해야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꼭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방해하거나 비협조한다는 분위기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장애물들이었다. 시민단

체에서는 인권조례를 우선 제정한 뒤 재개정은 다소 쉽다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하여 2008년 12월에 공표한 초안에서 많은 내용을 양보하여 최종안을 만들게 되었다. 결국, 양해영의 최종안은 진주시 구성원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과 여러 법령에 따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진주시 구성원들은 인권 보장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를 규정한 것으로, 인권 문제를 진주시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또 공식 기구를 통하여 인권 관련 사항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최종안을 만들어 가는 한편, 양해영 시의원은 진주시의 실무자들과 협의를 지속하였다. 이렇게 인권조례 제정이 표면화되면서 진주시에서는 이와 관련 사항을 상급 기관에 질의서를 보냈다(과정에 관하여 김중섭 2009, 128-129쪽 볼 것). 진주시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권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으며, 법제처에서는 진주시의 질의에 대하여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하기도 하였다. 결국 상급 기관에서는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진주시의 태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의견서와 진주시 소속 공무원인 진주시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통해 인권은 국가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진주시 전문위원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단체의 요구가 많아질 텐데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 5. 인권조례안의 발의와 진주시의회의 처리 과정

진주시의 반대 입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되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시민단체와 양해영 시의원은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9년 1월에 인권진주협의회에서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조례 발의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해영 시의원에게 대표 발의를 요청키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양 측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것을 2009년 6월 4일에 양해영 시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진주시 인권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접수하였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례가 없던 탓으로 진주시의회에서는 이 안건을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문제로 혼선을 빚었다. 처음에는 복지 관련 사항이라고 판단되었는지 사회산업위원회로 배정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곧 진주시 측에서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사항이라고 하여 심의할 상임위원회가 바뀌게 되었다. 곧,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업무가 어느 부서 사항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조례안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인권조례안은 결국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로 배정되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렇게 배정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로 인권조례를 제정할 상위법이 없으며, 인권 사항은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며, 또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sup>5)</sup> 그러나 인권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상위법 여부는 인권 관련 사항이 헌법과 각종 법률을 통해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김중섭 2009). 또한 1992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청주시의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의회는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는 상위법을 근거로

5) 이에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김중섭(2009) 볼 것.

조례 제정의 권한을 방기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것은 유일한 비한나라당 소속 시의원까지 가세하는 형국이어서 심의 보류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권을 국가사무로 해석한 것은 지방자치법 9조와 11조를 둘러싼 사무 분장에 대한 이해차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제9조의 내용은 '인권'이란 단어가 없을 뿐이지, 주민의 권익을 위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라는 것으로 인권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권의 개념과 실행 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또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더욱 큰 반발이 일어났다. 3년 가까운 기간 진행된 워크숍, 시민토론회, 전문가 초청간담회가 열렸다. 그 가운데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두 차례나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대하여 지역 언론은 지속적으로 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관심을 기울였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가 제정된다는 점에 지역 언론의 관심이 아주 커졌던 것이다. 또 안건을 상정하기 전 4월 30일에는 글쓴이가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왜 인권조례가 필요한가, 인권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가 등 예상 밖의 내용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수 차례 개별적으로 만난 시의원들은 인권조례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대한 언급 보다는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표 발의 의원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인권조례가 만장일치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에는 안건 발의에 서명한 시의원도 있었지만, 그 시의원은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이 안건을 발의하였다고 비난하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을 받을 때 서명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하나의 사례였다. 또 공개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 인권이나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던 것이다. 그리고 진주시의회의 유일한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인권조례를 보류한 입장을 개진하였다(강민아 2009). 그 내용은 대체로 진주시 소속 공무원인 시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상위법이 없다는 것을 제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의견을 따라 처리한 꼴이 되었다. 독자적인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상급 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진주시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은 이후 1년 동안 계속된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심의를 재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조례안이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동안 시민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진행 과정을 알렸다.<sup>6)</sup> 한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최한 인권조례 학술대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주최한 인권조례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부산시민센터에서 주최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인권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벌여 나갔다. 그리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진주시인권조례(안) 심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sup>7)</sup> 김백용 진주시의장, 강석중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 등을 면담하여 심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공동주최로 진주시 인권

6) 자세한 사항과 관련 문건은 <제5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 자료집 (2009. 12. 10,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주최) 볼 것.

7) 진주시에서는 상급 기관에 질의한 내용과 답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진주시의회는 심의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끝까지 진주시인권조례(안) 심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시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근거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주시의회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11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인 인권조례의 제정 효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조례 제정을 지체시키는 진주시의회를 규탄하며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시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광주의 사안과 진주의 사안은 다르다면서, 전국에 균등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이, 7명의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진주시의원들은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하여 인권진주협의회에서는 세계인권의 날에 열린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2009년 ‘인권도시 진주’의 걸림돌로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주시 인권조례(안)’이 표류하는 사이, 2009년 11월에는 광주광역시의 인권 조례가 전부 개정의 방식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2010년 3월에는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 참석하였던 경남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인권증진조례’가 제정되었다. 인권조례 제정을 지체시키거나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9년 6월 접수된 인권조례 안에 대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2010년 6월 30일까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진주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공개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인권진주협의회에서는 제5기 진주시의회가 2010년 6월 30일 회기 만료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5기 진주시의회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며, 인권 발전의 선진 지역 진주의 역사적 명성에 멍칠하는 만행이 될 것이다. 특히, 진주시의원들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인권진주협의회 성명서, 2010. 3. 29)

심지어 2010년 4월 15일에 개최된 136차 임시회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초기에 인권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던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입장을 바꿔 이 안건의 처리를 주장하였고, 양해영 시의원은 안건 처리와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렇지만 결국 진주시인권조례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처리 방해로 말미암아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 한 채 제정이 무산되었다. ‘진주시인권조례’(안)은 제5기 진주시의회가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던 것이다.

## 6. 맷음글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진주시의회 의원이 2009년 6월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인권조례안은 진주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노골적인 반대로 보류되어 있다가 제5기 진주시의회가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 결과 지역사회운동단체에서 추구하였던 인권도시 진주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진주시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진주시 집행부의 비협조 내지는 거부가 보이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급 기관에 질의한 내용이나 시 소속 공무원인 진주시의회 전문위원들이 밝힌 의견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요인도 있다

고 짐작된다.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관장하는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의원의 활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문제는 지역 민주주의 발전의 쟁점과 이어지게 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는 인권과 인권조례에 대한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이해 부족이었다. 법리적 논란이 벌어진 것은 모두 상위법 부재나 자치입법권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소극적 태도와 편협한 해석이 작용하였다.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의 개념 구분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지자체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 민주주의 행위자들의 인식 향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논의 과정에서 인권이나 인권 관련 사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을 포괄적,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좋은 것으로 이해할 뿐, 그것이 주민들의 삶 향상에 직결된다는 인식은 부족하였다. 이렇게 인권이나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이해 부족은 인권 보호와 증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는, 인권조례 제정 무산의 최대 요인으로서, 진주시의회 의원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논의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낸 요인은 법적 조항의 해석 문제처럼 보이지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 감춰진 이유는 의원들 간의 견제, 질시, 갈등 관계였다.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조례 제정은 진주의 역사적 배경이나 현대의 상징적 의미 측면에서 중요한 업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둘러싼 공적싸움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연히 대표 발의자에 대한 개인적 친분이나 비우호적 관계 등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것은 공적인 회의장에서 드러낸 표현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대표 발의자에 대한 드러낸 적대감이나 비우호적 태도에서 쉽게 파악되었다. 결국 주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시의원들의 판단 기준은 주민의 권리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 관계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사항인데, 밀접한 연고주의가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문화 속에서 더욱 만연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기 힘든 이유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반대 이유로 공론화 부족을 내세웠던 것이다.

넷째로 작용한 이유는 시민단체의 역량 부족이었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인권 개념이나 영역, 조례 제정의 중요성이나 내용,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얻는 이점 등 하나하나가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주도하는 활동가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단체는 제각기 고유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조례에 전념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였다. 결국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저조하였다.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성원을 보내주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여론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서 발표 수준의 미온적 대응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집행행동을 벌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와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된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나 성원이 부족한 탓도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무시로 일관하였으며, 다른 의원들은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에 몰두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회기가 끝나가는 즈음에 민감한 사안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속셈도 작용하였다고 짐작되었다.

## <후기>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현 시점에, 전국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현재 주민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인권기본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 조례, 2009년 10월 27일 전부 개정 공포), 경상남도(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0년 3월 25일 제정 공포), 전라북도(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0년 7월 9일 제정 공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조례, 2010년 11월 22일 제정 공포) 등이다. 그리고 부분적인 일부 주민들을 위한 인권조례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조례가 안산시(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09년 3월 27일 제정 공포), 광주광역시 남구(2009년 6월 10일 제정 공포), 광산구(2009년 11월 30일 제정 공포), 전남 목포시(2009년 10월 12일 제정 공포)에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인권 조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0년 5월 6일 제정 공포), 전라남도 (2010년 5월 13일 제정 공포)에 제정되었으며, 학생 인권조례가 경기도 (2010년 10월 5일 제정 공포)에 제정되었다. 인권조례 제정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권 실행 수준을 높이는가에 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각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실행하는가를 잘 관찰하고 감시하여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결과는 흥미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 가운데 3명은 지방선거에 불출마하였다. 그리고 출마한 4명 가운데 3명은 낙선되었고, 민주노동당 소속 1명만 당선되었다. 낙선된 3명 가운데 2명은 한나라당으로 다시 공천을 받았고, 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지만, 최하위권으로 낙선하였던 것이다. 인권 보호와 증진은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모두 지방 자치의 주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민아. 2009. “왜 인권조례를 보류했나,” (경남도민일보 2009. 6. 25).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2008. 『지자체 조례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활동가워크숍: 2008 광주지역사무소 인권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 김종익. 2007. “목포지역의 인권조례 제정 사례: 생활 속의 인권운동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 <진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2007. 10. 17) 자료집, 19-29쪽.
- 김중섭, 「형평운동 연구: 일제 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서울: 민영사, 1994).
- 김중섭,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김중섭 (엮음),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2001 진주지역 사례 연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15-48쪽.
- 김중섭, “아이들의 인권: 이중성의 딜레마,” 김중섭 (엮음),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진주지역 사례 연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17-53쪽.
- 김중섭, “정부 조직체와 인권 발전,” 「한국사회학비평」 제3권(2003).
- 김중섭,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과 인권 증진,” 김중섭, 토모나가 겐조 (엮음), 「세계화와 인권 발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4), 159-189쪽.
- 김중섭, “지역공동체와 인권: 인권 실행의 증진 방안을 찾아서,”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원), 30권 4호(2006-7), 131-153쪽.
- 김중섭. 2006. “진주지역 인권 운동의 발전: 그 기원과 방안,” 「사회과학연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24집 1호(2006-1), 7-40쪽.
- 김중섭,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 진주시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원), 31권 4호(2007, 겨울호), 33-56쪽
- 김중섭 (엮음),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2001 진주지역 사례 연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 김중섭 (엮음),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진주지역 사례 연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 김중섭, 토모나가 겐조 (엮음), 「세계화와 인권 발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4).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엮음),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을 중심으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7. 11. 12).
- <제1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 자료집 (2005. 12. 10,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최).
- <제2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 자료집 (2006. 12. 7,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주최).
- <제3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 자료집 (2007. 11. 24,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주최).
-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 자료집 (2008. 12. 10,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주최).
- <제5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 자료집 (2009. 12. 10,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주최).
- 조상균,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인권법평론』 2(2008).
- <진주인권조례를 준비하는 시민토론회> 자료집 (2007. 9. 19,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주최).
- <진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7. 10. 17,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주최).
- <진주인권회의 토론회> 자료집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시민. 여성. 장애인 인권”(2003. 12. 10,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주최).
- 토모나가 겐조(友永健三), “일본의 인권상황과 인권조례 제정의 배경,”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7. 11. 12), 9-51쪽.
- 江橋崇, “人權條例の廣がった背景と、人權のまちづくりとの結びつき,” 部落解放人權研究所 (엮음), 「地

域に根ざす人権条例：人をつなげるまちづくり」（大阪：解放出版社，2003），6-27等。  
部落解放基本法制定要求 國民運動中央實行委員會（엮음），「全國で條例宣言を」（大阪：解放出版社，1994）。  
部落解放研究所（엮음），「人権条例とまちづくり：地方分権の視野から」（大阪：解放出版社，1997）。  
部落解放人權研究所（엮음），「地域に根ざす人権条例：人をつなげるまちづくり」（大阪：解放出版社，2003）。  
友永健三，“人権のまちづくりと条例の具體化”，部落解放研究所（엮음），「人権条例とまちづくり：地方分権の視野から」（大阪：解放出版社，1997），14-31等。  
友永健三，“部落差別撤廃・人権条例制定の現状と今後の課題”，部落解放人權研究所（엮음），「地域に根ざす人権条例：人をつなげるまちづくり」（大阪：解放出版社，2003），84-100等。  
Kim, Joong-Seop. 2010. "Toward Human Rights in the Local Community: Multiple Approaches for Implementation," *Development and Society*, Vol.39, No.1, pp. 119-137.

## 제 7 부 : 도시 운동과 인권 운동의 결합 과제

사회 : 고은태 (중부대 교수/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

발표 :

- 박래근 (인권재단 사람)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 인권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지정토론(기나다 순)

- |                     |                      |
|---------------------|----------------------|
| ●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   | ● 김중섭 (경상대 교수)       |
| ● 김홍철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장) |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 서중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그 외 참석자 전원 토론 참가

## ‘인권도시’ 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언

**박래근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1. 우리에게 도시는 무엇인가?

도시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것도 밀집해서 살아가는 곳으로 생각된다. 도시는 모든 것이 좁은 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교통, 교육, 문화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위한 공간도 집약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이런 도시는 인간이 살 만한 곳은 아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지배받는 도시에서는 도시 아닌 곳보다 차별과 배제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은 욕망을 분출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지만, 권력과 돈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화려한 도시의 음지를 겨우 차지하고 있거나 그곳에서마저도 쫓겨나기 일쑤다. 그러기에 도시는 비정하다. 거기에 종종 인간은 잊힌 존재다.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재개발의 역사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곳을 자본이 확실히 장악하는 곳으로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도시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좌절을 겪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 화려하면 할수록 소외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도시에서 인권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도시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도시 안에서 마을을 만들고, 도시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할까? 이런 노력과 시도들이 종종 무모하게 비추이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오늘의 학술대회는 이런 물음들을 품은 사람들이 이런 물음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 같다. 그러기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시

종합토론에 해당하는 이 섹션의 발제를 위해서는 앞선 섹션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도리어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학술적인 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필자가 고민하던 문제를 던지는 식으로 발제에 가름하려고 한다.

### 2. 도시에 인권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가?

근대 초기 도시는 자유의 근원지였다. 토지와 신분에 결박당해야 했던 중세 농노들이 자유를 찾아나서서 형성했던 것이 도시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근대를 경과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는 뒤바뀌었다. 도시는 농촌을 해체시키고, 그 해체된 인력이 몰리면서 이주해온 농민들(도시빈민)을 초과착취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의 개념은 도시로부터 탄생했다. 근대 부르주아지는 도시의 탄생과 성장과 떼려야뗄 수 없는 관계다. 부르주아지들은 민중들을 동원하여 근대시민혁명을 일으켰고, 권력을 장악했다. 인권의 이상을 기치로 높이 들고서 말이다.

하지만 그런 뒤에 부르주아지는 혁명적 이상이었던 인권의 이상을 팽개쳤고,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 뒤 인권은 철저하게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 확장되는 길밖에 없었다.

식민지에서 도시는 식민지배세력과 결탁한 매국노들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농촌은 역시 초과착취의 대상이었고, 도시빈민들 또한 초과착취의 대상이었다. 인권은 어디서고 들어설 수 없었다. 도시가 갖는 억압과 차별의 역사는 지금도 변주된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자유롭지 못한 인간관계, 평등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문제 삼는다. 인권은 사람 사이의 권리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해 들어간다. 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평등하지 못할까? 그것이 권리 때문이라면, 정치권력이든, 공적권력이든, 사적권력이든 모두 문제 삼는다. 인권은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권에 대한 도전의 역사가 인권의 역사다. 특권을 해체하고 보편화하는 과정이 인권의 역사다. 그래서 억압과 차별을 특별하게 주목하는 게 인권이다. 그리고 그 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연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도시는 어떨까? 타워팰리스와 비닐하우스촌이 대비되는 것처럼 도시에서 억압과 차별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욕망을 추구하는 경쟁도 당연하다.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하다. 신자유주의에 들어와서는 이런 현상이 더더욱 노골화되었고, 정책적으로 권장되기까지 한다. 경쟁에서 살아나는 길을 추구하는 도시에서 인권은 없다. 이런 점들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곳이 용산이었다. 용산은 이런 욕망과 경쟁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용산은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다. 눈을 둘려 보면 도시 곳곳에서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만난다.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 은폐되어 있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려고 노력하면 보인다.

### 3. '인권도시' 만들기는 가능할까?

지금까지 도시에 대한 인권적 논의의 중심에는 주거권, 특히 빈곤층의 주거권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도시를 뒤덮는 슬럼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는 빈곤 문제의 해결이 인권 문제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였고, 빈곤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민중운동 국제인권조직인 PDHRE이 최근에 인권도시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 도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관계를 '인권'의 이름에 맞추어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인권도시는 한국에서는 광주시장이 된 강운태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강 시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이 광주를 인권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시장의 이런 노력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광주가 표방해왔던 평화와 인권 도시라는 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광주항쟁의 정신이 광주시정에 반영되었다거나 광주가 인권공동체로 재구성되었다고 볼 만한 하등의 근거들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계획도 아직 없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먼저 인권 거버넌스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와 경제 등의 주체로 서는 것부터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인권적 재구성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도시를 주창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최근에 추진되는 지역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지역민들은 인권조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추진되었고, 성립이 되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런 선구적인 노력이 갖는 의미들은 그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그 이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 경로를 그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논의에는 처음부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4. 도시에서 인권을 말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만들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방자치체에서는 이런 저런 인권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권조례들이 기본방향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거나 인권과는 어긋나는데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조례 제정운동은 필요하다.

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보장하는 기본권을 도정, 또는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 그때 기본권의 내용들은 주로 사회권 분야에 대한 것을 구체화할 것이므로 인권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권위원회와 같은 지역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진정하고 상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와 함께 시민들이 인권 교육을 하거나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율적인 인권활동을 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도시를 인권화하는 일에 인권조례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인권실태조사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를 통해 관련한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고, 주체도 찾아낼 수 있으며, 조직화 경로도 그려낼 수 있다. 그런 뒤에 지역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담론화하는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여론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주체의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하고, 그들에 의해 서 추진되도록 해야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훈련되고, 조직될 것이며, 그것은 지역에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도시에 다수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를 포기하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운동과 도시운동은 다른 말이 아니다. 물론 도시운동은 생태운동이기도 하고, 여성운동이기도 하고, 지역운동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런 운동들이 분절화되어서 추진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추진될 때 인권도시는 제대로 의미가 있겠다.

결국 이 모든 운동은 도시의 권리관계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 등의 모든 권력을 변화시켜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억압과 차별은 특권화되어 있고, 위계화된 권리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은 이런 권리관계를 드러내고, 문제삼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제 도시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다 풍부한 상상력을 발동하여 꾸준하게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말로 발제를 가름한다. (끝)

### <기증설>

- 적절한 것인가 : 방향 설정 & 소비예측
- 실행 가능성 : (산천군·노인인구).
- 다각적으로

### <감통설>

- 도시권 : 강자의 개념이 될 수도
- 권리의 대립? 성비산-고속도로 vs. 환경권
- 도시계획 : 전문가와 행정의 일?  
\* 예전 무지개 프로젝트

### <기반설>

- 이권과 도시,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끄러움
- (· 사실·수단 공공공간 자체에서의 사람 존중  
· 보편적+특수적 방식 동시 접근해야)  
노숙인통  
· 보행자와 노점
- 도시 공간이론의 한계 : 문화 창출하는 배경으로서의 공간까지  
위해로소의 제거를 넘어서 간다면  
해석으로서는 의미있을지 몰라 청진적으로는 문제
- 인권조례가 넓도록 필요한 것인지,  
교통·도시 조례 등으로 구체적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 <서증준>

- 도시이론·정책들이 인권적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수반적...
- 지역에서 좋은 사례들이 나와줬으나  
(언어보다 인권친화적인 지방정부가 있다면 -)

※ 1967년과의 차이, 평등/불평등이 아니라 탐색  
'인간도시 케이스'

\* 도시간 불평등 : 행정구역상의 경계와 다른 무언지 필요하지는 않을까.

\* 정의와 권리 : 청년동자들

\* 경제학기금지법 : 계획자의 권리.

\* 인권의 시선으로 도시를 ...  
(경쟁권과 도시)

### (김용창)

- 도시권을 해체하다 보면  
인권이지 않을까.  
행정하기, 구분되는 개념인가.

### (조명래)

- 이후 어떻게 이어갈지 ...

### (김자운)

- the right to the city 해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는데.

### (김창희)

- 정의란 무엇인가, 물질적인 유지를 파괴하는  
한국  
한국을 부족한 느낌.  
집착으로 개념 만들기 위한 토론 필요.

→ 제3세대 인권.

← 강제퇴거금지법  
- 도시 속 인구 →

정의와 인권을 다룬다!  
저항에서 출발.  
(구체적 계기 없이)  
개념 구성되자마음껏

\* 공간은 살아가면서 창출하는 것!

### <부록>

## Montre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sup>8)</sup> 몬트리올 권리와 책무 협약

번역 : 장보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 1. 시장 인사말

광범위한 공개 협의가 진행된 결과, 몇몇 전문가의 투입 덕분에 <권리와 책무의 몬트리올 협약>은 전 몬트리올인이 공유하는 가치를 공인하고 우리 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창의적인 접근을 사용하여, 본 협약은 권리와 또한 책무의 원칙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공공 서비스의 계속되는 향상에 대한 몬트리올과 모든 개인의 확고한 약속을 요청합니다.

본 협약은 그 내용에 기초한 생활에 시민과 도시가 이견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책임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으로서 몬트리올 행정감찰관을 지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협약에 포함된 권리의 존중을 보장할 시민과 도시의 공동 노력이 주가 됩니다.

시민, 선출된 관리, 자치 행정부 사이의 진밀한 결속을 조성하는 것에 더하여, 이 협약으로써 몬트리올은 우리가 의미를 두는 가치들-개방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연대, 투명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미래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를 채택합니다.

우리의 협약은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서는 최초라고 자부할만 만합니다.

몬트리올 시장 Gérald Tremblay

\* 2005년 6월 20일 몬트리올 시의회는 권리와 책무의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했다. 몬트리올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몬트리올 협약은 민주주의 대책위원회의 감독 하에 개발되었다.

### 2. 전문

몬트리올 정상회담 (2002)에서 도시 내 시민의 권리를 정의할 뿐 아니라 시민들을 결합시키고 관계를 맺어주는 가치들을 강조하게 될 <권리와 책무의 몬트리올 협약>에 찬성하여 합의에 도달하므로,

시민은 몬트리올(시)과 함께 안전과 이웃 관계를 발전시키고, 사회 환경을 존중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 및 존중하는 도시 가치를 유지할 책무가 있으므로,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하고 보장했으며, 국제 및 미대륙 국가간 인권대회 중에 캐나다가 비준하고 퀘벡이 당사자로 선언한 권리와 자유를 시민이 누리므로,

<세계인권회의> (1993)가 공표한 <비엔나 선언> 하에 모든 기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관련되

8) 이하 <권리와 책무의 몬트리올 협약>으로 옮김.

어 분할불가능하므로,

<인권과 자유의 퀘벡 현장> (1975)과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 현장> (1982) 하에 시민은 기본권을 누리므로,

<인종차별 반대 몬트리올 선언> (1989)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세계인의 날” 인 3·21 선언> (2002)을 고려하여,

<문화 다양성과 포함에 관한 몬트리올 선언> (2004)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IULA)의 <지방 정부에서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에 몬트리올이 조인함을 고려하여,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몬트리올 선언 (2005)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몬트리올 커뮤니티의 정책 성명서> (2003)를 고려하여,

몬트리올이 행동과 권위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책무의 진작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포괄적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보호하고자 노력함에 있어 몬트리올은 선출된 공무원, 고용인, 준정부 행위자, 시영 회사를 고용할 생각이므로,

모든 시민은 타인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는 것을 침해하고, 그럼에 따라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과 질을 약화시킬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므로,

각각의 시민은 법률과 조례 및 공공선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권리와 책무의 몬트리올 현장>은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책무를 실행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서 제공되어 온 독창적인 문서이고, 그래서 만일 몬트리올, 준공공 기관, 시영 회사, 시공무원, 고용인, 또는 시를 위해 일하는 다른 어떤 단체의 결정이나 행위 혹은 누락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행정감찰관에게 그것을 언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써 몬트리올은 이들 권리와 책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적용을 보장하는 것에 시민과 함께 협신을 다해 일할 것을 이 <권리와 책무의 몬트리올 현장>을 통해 선포한다.

## 제1부 원칙과 가치관

제1조\_ 도시는 인간의 존엄성, 관용, 평화, 포용 및 평등의 가치가 모든 시민들 사이에 고취되어야만 하는 영토이자 생활 공간이다.

제2조\_ 인간의 존엄성은 빈곤과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민족이나 국적, 인종, 나이, 사회적 지위, 결혼 여부, 언어, 종교, 성별, 성적 성향 또는 장애에 근거한 것들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투쟁의 일부로서 보존될 수 있을 뿐이다.

제3조\_ 존중과 정의, 공평은 민주적이고 연합된 포괄적 도시로서 몬트리올의 지위를 높이려는 집합적 욕망을 생기게 하는 가치관이다.

제4조\_ 투명한 시정 운영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 촉진에 기여한다.

제5조\_ 시민의 시정 참여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발전시키며 능동적 시민의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제6조\_ 시민의 발전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고양하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제7조\_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에 기여한다.

제8조\_ 우리 유산의 인식과 보호 및 보존은 삶의 질의 유지와 향상 그리고 몬트리올의 명성에 기여한다.

제9조\_ 문화는 몬트리올의 정체성과 역사 및 사회적 화합의 핵심 요소이며 도시의 발전과 활력에 본질적인 원동력으로 기여한다.

제10조\_ 서비스의 공평한 공급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다.

제11조\_ 여가, 신체 활동 및 스포츠는 종합적인 개인의 발달과 문화적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삶의 질 측면이다.

제12조\_ 몬트리올의 다양성을 공동체와 모든 출신의 개인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와 그 포함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강화되는 위대한 자원을 나타낸다.

제13조\_ 몬트리올은 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영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도시이다.

제14조\_ 시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 제2부 권리, 책무, 약속

### 제1장 민주주의

#### 제15조\_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유민권을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일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기여한다.

시민은 그들의 수단 내에서 그들과 관련 있는 쟁점에 투표권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도시의 결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알려진 견해를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제16조\_ 약속

시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a)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시민에게 유용하고 명확하게 만든 정보를 제공할 것

b) 시의 문제들에 적용되는 문서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c) 적절한 절차를 적용 및 유지함으로써 공개 협의 과정이 신뢰할만하고 공개적이며 효과적이도록 보장할 것

d) 공개 협의 개최 이전과 그 적용 이전에 몬트리올 재정 입출금내역, 예산, 3개년 자금 운용 프로그램의 연간 개요를 제공할 것

e) 시민들 속에 도시의 가치를 조성할 것

f) 협의 및 의사결정체 내부에 모든 출신의 여성, ‘원주민’, 민족 및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 및 가시적 소수자, 젊은이에 의한 대의권을 촉진할 것

g) 남녀 간의 평등을 지원할 것

h) 제42조에 제시된 것처럼 본 헌장의 개정 시한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수립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개 협의에 관한 시민발의권을 승인할 것

i)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반을 침식하는 모든 차별, 외국인혐오증, 인종주의, 성차별 및 동성애혐오증, 빈곤, 사회적 배제와 투쟁할 것

j)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가능한 공정한 접근에 부합되게, 청년 고용을 확충함으로써 그리고 도시의 인구 다양성을 반영하는 고용인들을 채용함으로써 몬트리올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계획할 것

## 제2장 경제 및 사회 생활

### 제17조\_ 권리와 책무

시민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일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기여한다.

### 제18조\_ 약속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 a) 주거가 공공 건강과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하고 어떤 주택이 폐쇄되거나 비워져야 한다면 재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혹시라도 험리스가 어려움을 표현한다면,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험리스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c) 주거 조치의 이행에 있어 취약 계층 특히 저소득 가정의 개인들의 필요를 고려할 것
- d) 취약 계층이 적절하고 적정한 주택에 접근하도록 촉진하는 원조 조치를 정부 파트너의 지원과 함께 유지할 것
- e)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제거를 고려하여 시민에 의한 그들 환경의 장악을 촉진할 것
- f) 시민에게 충분한 양의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
- g)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떤 시민도 음용수 공급이 거부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

## 제3장 문화 생활

### 제19조\_ 권리와 책무

시민은 문화적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일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기여한다.

### 제20조\_ 약속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 a)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보여주고, 이 유산을 조명하는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그 문화 및 예술 센터에 대한 지리적·경제적 접근을 유지하고 그것들의 이용을 조성할 것
- c) 창조적 시도를 촉진할 것
- d) 문화적 실천의 발전과 다양성을 지원할 것
- e) 지식과 정보를 위한 장소로서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발전을 조성할 것

## 제4장 여가, 신체 활동, 스포츠

### 제21조\_ 권리와 책무

시민은 여가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의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들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일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예를 들어 커뮤니티 시설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이 노력에 기여한다.

### 제22조\_ 약속

여가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a) 공공의 진화하는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
- b) 커뮤니티의 진화하는 필요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된 여가와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과 고급 공원을 개발할 것
- c) 활동들과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 제5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 제23조\_ 권리와 책무

시민은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일치하는 활동, 특히 책임 있는 물 소비에 대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기여한다.

### 제24조\_ 약속

시민들이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누리도록 조성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a) 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할 것
- b) 환경 및 건축 유산의 보호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조정할 것
- c) 공기질과 해안선의 물 그리고 토양의 지속적인 향상을 조성할 것
- d) 차량 이용을 감소시킬 도시 대중교통 및 환승 시스템을 촉진할 것
- e) 도시의 강가와 녹지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 f) 자연환경과 도시 숲의 보호와 향상을 촉진할 것
- g) 소음과 교통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한, 쓰레기 투기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시민에 의한 도시의 책임의식을 고무할 것

## 제6장 안전

### 제25조\_ 권리와 책무

시민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

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일치하는 활동, 특히 예방적인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이 노력에 기여한다.

#### 제26조\_ 약속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리도록 조성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a) 그 영토를 안전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
- b)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가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여성들의 안전을 목표로 한 특별한 조치를 지원할 것
- c) 공원과 커뮤니티 및 여가 시설과 같은 공공 공간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것
- d) 공공 안전 및 시 공무원과의 파트너십으로 이 쟁점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관여의 향상을 목표로 한 예방적인 조치를 지원할 것
- e) 사람과 자산을 보호할 것

#### 제7장 공공 서비스

#### 제27조\_ 권리와 책무

시민은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일치하는 활동, 특히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이 노력에 기여한다.

#### 제28조\_ 약속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조성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a) 공공서비스를 능숙하고 정중하며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것
- b) 공정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분배를 촉진할 것
- c)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도록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공공 공간의 이용에 있어 유연성을 고취할 것
- d) 시민에게서 그들의 집과 인도와 오솔길의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안전한 보행 접근권을 빼앗는 중단과 장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f) 도시를 조직함에 있어 특히 공공 건물과 서비스의 경우 보편적 접근을 촉진할 것

#### 제3부 범위, 해석, 이행

제29조\_ <권리와 책무의 몬트리올 헌장>은 몬트리올과 준공공 기관, 시영 회사, 그들의 고용인, 시공무원,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 일하는 다른 모든 단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 또한 모든 몬트리올 시민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권리와 책무의 몬트리올 헌장>은 <Charter of Ville de Montréal> 제 144조에 규정된 기준의 최소 집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것은 여기에 제정된 규칙 하에 자치구에 적용한다.

제30조\_ 본 헌장에서 ‘시민’이란 이 도시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아무나를 의미한다.

제31조\_ 이 약속들은 이미 몬트리올 당국에 부과된 한계들에 영향을 받으며 당국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정 자원에서 내재하는 한계까지 그리고 자유 민주 사회 내의 합당한 한계까지 도시에 의해 정부의 다른 수준들과 공유한다.

제32조\_ 어떤 시민이 제2부에 제시된 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행정감찰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본 헌장은 법률적 행위를 위한 기초로 기여하거나 재판이나 유사 재판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제33조\_ 본 헌장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행정감찰관은 반드시

- a) 불만에 답변함에 있어, 본 헌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해석해야 한다.
- b) <행정감찰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헌장 제 2부에 기초한 시민의 불만과 몬트리올, 준공공 기관 및 그 고용인, 시영 회사 및 그 고용인, 시공무원 및 시를 위해 일하는 어떤 사람의 결정, 행동, 누락의 결과인 시민의 불만을 조사한다.

제34조\_ 본 헌장에 기초한 어떤 조사의 목적을 위해, 행정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제2부의 해석 시 본 헌장 전문과 제1부를 참조할 수 있다.

제35조\_ 행정감찰관이 제기한 불만의 기본원칙이 본 헌장으로부터 발생하고 시의회나 집행위원회 또는 자치의회의 결정에 기초할 때, 행정감찰관은 그 불만이 포함하는 결정, 권고나 조치 혹은 누락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결정, 권고, 행동이나 누락이 사실상 기본적인 예산이라면, 본 절의 첫 단락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6조\_ <행정감찰관에 관한 조례>의 다른 모든 조항은 헌장이 그 범위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헌장에 따라 행정감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불만과 수행하는 조사에 적용한다.

제37조\_ 본 헌장으로 인한 불만이 인정된다면 행정감찰관이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행정감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헌장과 양립할 수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재에 개입할 수 있다.

제38조\_ 조정의 모든 경우에 있어 행정감찰관은 얻어낸 결과와 그 또는 그녀의 권고 사본을 그 불만과 조사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게 전송해야 한다.

제39조\_ 중재의 어떤 경우에서도 행정감찰관의 보고서는, 취해야 할 행동이나 중단해야 할 행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세부사항과 권고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중재의 결과나 그 또는 그녀의 권고사항의 본질을 진술해야 한다.

적절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는 불만이 발생한 상황을 적정 시간 내에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감찰관의 보고서는 그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제40조\_ 행정감찰관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명기된 대로 시민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권리 침해와 관련되는 조사에 그 또는 그녀 말의로 착수할 수 있다.

제41조\_ 행정감찰관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또는 그녀의 임무 수행과 관련되는 연간 보고서는 본 현장에 기초한 그 또는 그녀의 행동과 활동의 요약을 제공하는 특별 절을 포함해야 한다. 행정감찰관은 그것에 그 또는 그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고사항도 만들 수 있다.

#### 제4부 최종 조항

##### 제42조\_ 헌장의 개정

본 헌장이 발효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몬트리올은 헌장이 규정하는 감시, 조사 및 불만 절차뿐 아니라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의 효과성과 타당성 및 범위의 평가를 목적으로 공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도시의 역사는 개발의 역사다.**

**그리고 개발은 언제나 어김없이 인권을 짓밟아 왔다.**

개발의 역사를 되짚지 않고 도시에서 인권을 말할 수 없다. 60년대 광주대단지 항쟁에서부터, 사당동, 상계동, 행당동 등을 거치며 인권이 도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도시가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드러났다. 2009년 용산참사는 지금과 같은 개발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이다. 도시와 인권 영화제는 개발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해보려고 한다.

**12:30~14:20**

**상계동 올림픽** \_ 김동원, 1988, 27분, 다큐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 이연에는 대의를 위해 강제로 희생을 요구당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 이 영화는 당시 도시 미관을 위한 재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상계동 173번지 주민들의 3년간 투쟁기록이다. 투박하고 거친 화면에 담긴 현장의 긴박함과 집을 잃은 이들의 울분 섞인 절규. 이 작품이 갖는 의미는, 12년이 지난 2010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장을 연 기념비적인 작품.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_ 장호경, 2009, 60분, 다큐

용산 참사의 본질적 원인인 대책 없는 악가파 개발에 맞선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산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망루 이전의 진실을 밝혀본다. 또한, 용산 참사 이후 100일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해결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눈물과 투쟁을 담았다.

• 활동가와의 대화

**14:30~15:40**

**평범한 사람들** \_ 흥경탁, 2010, 32분, 극영화

남편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아내는 철거문제와 직면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을 떠나면서 철거문제와 직면하면서 남편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시트콤** \_ 박대진, 2010, 20분, 극영화

영수는 40대의 평범한 남성 직장인이다. 그는 과거 학생운동 경력이 있으며 나름 개척적인 시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재개발 예정 구역에 조그마한 집도 한 채 있다. 그러던 중 용산 참사가 일어난다. 분노한 영수는 거리 인터뷰에 응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가진다. ....

**15:50~17:20**

**남일당 이야기** \_ 평화바람, 2010, 86분, 다큐

서울시 용산구에 들이닥친 개발 바람은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몬다. 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남일당' 건물을 옥상에 망루를 짓고 올랐다. 하지만 공권력 폭력 진압으로 철거민 5명, 특공대원 1명이 희생된 '용산참사'가 벌어진다. 카메라는 삶의 터전은 뺏겼지만 동지를 엎고 투쟁을 벌웠다는 할머니들의 육성을 담아낸다.

## 도시와 정의, 도시와 인권 \_ 학술 심포지움 참여 기획안

**작성 : 예술과 도시사회 연구소**

### <컨셉>

3년 넘게 문래동 지역 연구 및 실천을 해온 예술과 도시사회 연구소는 본 학술 심포지움에 '설치전시'와 '대화퍼포먼스'로 참여한다.

1. <문래동>이라는 제목의 본 설치작품과 퍼포먼스는 '건설용 비계'를 조형작품처럼 설치하여, 그 설치물과 함께 비디오영상, 소리사운드, 연구자료집, 행사 카타로그 등이 전시된다.

2. 심포시간동안 <문래동>작품이 설치되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설치작품주변에 앉아 관객들과 문래동에 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진행일정>

1. 11월 23일 (화) 오후 2시 현장 답사\_작품 설치 장소 확인
2. 12월 3일(금) 오전 9시경 설치 시작
3. 행사를 마치고 나면 작품 철수

### <기대효과>

학술심포지움은 통상적으로 텍스트 발표로 진행되지만, 본 연구소는 전시의 형태로 참여하여 학술 심포지움에서 새로운 발표 형식을 선보인다.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는 2007년부터 문래동에서 활동하던 예술가, 도시사회학 연구자, 미학연구자, 예술행정 연구자, 문화예술기획자 등이 자신들의 거주지이자 활동 공간인 '문래창작촌'을 연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족하였다. 현대 도시와 예술의 문제를 사회 실천적 지평으로 연구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연구소의 주요연구방식은 사회문화 생태학적 관점에서 현장과 지역에서의 밀착형 연구이다. 또 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술, 문화기획은 프로젝트 스페이스 랩39(project space LAB39)와 연동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연구소는 문래동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가능한 문래동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와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 2007년 9월 발족

- o 서울 도시 빈 공간 연구 진행
- o [문래 창작촌 연구]연구자료집 발간

◎ 2008년

- o [서울 창작환경 정책토론회 -서울 문래동에서 아트팩토리까지]
- o 서울시 창작공간조성을 위한 문화생태계조사 [홍대지역/문래지역/국내외참고사례연구]연구자료집 발간

◎ 2009년

- o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 해외사례 연구 \_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연구 연수
- o 도시 재생의 대안적 미래 \_ 문래예술공단 연구

◎ 2010년

- o 문래동 백서\_문래동을 작업하다 집필중 \_ 이매진 출판사 출판예정
- o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도시에서의 공동체 생성 연구 중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41번지 203호 / 070-7571-5441 / [paledall@hanmail.net](mailto:paledall@hanmail.net)

## 참여단체 소개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아파트 908호 (우) 110-724  
[dosi@dosi.or.kr](mailto:dosi@dosi.or.kr)

###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1006호 (우) 110-061  
[kocer@chol.net](mailto:kocer@chol.net) 02) 738-4292

### <녹색교통운동>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4층 (우) 121-250  
[kngt@chol.com](mailto:kngt@chol.com) 02-744-4855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평등하고 평화로운 인간,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인간의 권리 존중하고 옹호하며,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질서 창조를 꿈꾸고 실천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 3층 (우) 100-360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02-365-5363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보편적이고 진보적인 주거권 운동을 고민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모임이다. 매달 웹진 <진보복덕방> ([www.jinbohousing.org](http://www.jinbohousing.org))을 발행하고 있으며 최근 책 <집은 인권이다>를 내기도 했다. 현재 강제퇴거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housing@jinbo.net](mailto:housing@jinbo.net)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2009년 1월의 용산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진실을 회복하고,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었던 재개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1월, 용산참사에 대한 기억이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추모주간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5-12(2층) (우) 120-012  
[mbout@jinbo.net](mailto:mbout@jinbo.net) 02) 3147-1444

### <인권영화제>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를 알려주는 영상 속으로 사람들을 초

대합니다. 세계 곳곳의 '인권을 위한 투쟁'과 '인간을 위한 영상'을 발굴하는 것도 인권영화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 3층 (우)100-360

hrfilmfestival@empal.com

####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2007년부터 문래동에서 활동하던 예술가, 도시사회학 연구자, 미학연구자, 예술행정 연구자, 문화예술 기획자 등이 자신들의 거주지이자 활동 공간인 '문래창작촌'을 연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족하였다. 현대 도시와 예술의 문제를 사회 실천적 지평으로 연구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연구소의 주요연구방식은 사회문화 생태학적 관점에서 현장과 지역에서의 밀착형 연구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술, 문화기획은 프로젝트 스페이스 랩39(project space LAB39)와 연동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연구소는 문래동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문래동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와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41번지 203호 (우) 150-834

paintkyh@hanmail.net 070) 7571-5441

#### <(사) 한국공간환경학회>

1988년 공간환경 분야 신진 연구자들이 학술운동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창립된 이후, 그동안 학회지 <공간과 사회> 발간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지향적 학술 활동을 수행해 왔다. 현재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로서 진보적 입장의 공간환경 연구를 대변하는 학술단체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85 리슈빌딩 402호

kaser@kaser.or.kr 02) 797-4855

\*의원회

공간/환경위원회  
（민주법연  
（환경단체  
（연합  
（전체연

승인당 20  
국 10  
상계동 5 (OK)  
배당금 5 (OK)  
\*마지막  
\* 팀별 등